

Gyeonggi Cultural Arts Education Basic Plan

경기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 (2018~2022)

제 출 문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 귀하

본 보고서를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의뢰한 「경기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2018~2022)」의 최종 성과품으로 제출합니다.

2018년 12월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참여연구진

연구책임 김성하 ■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진 여금미 ■ 광운대학교 외래강사

 황선아 ■ 경기연구원 연구원

- 목 차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3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5

제2장 중앙정부 문화예술교육 정책 및 현황

- 1. 문화예술교육 관련 법 및 정책9
- 2. 문화예술교육 현황 12
- 3. 시사점 3

제3장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정책 및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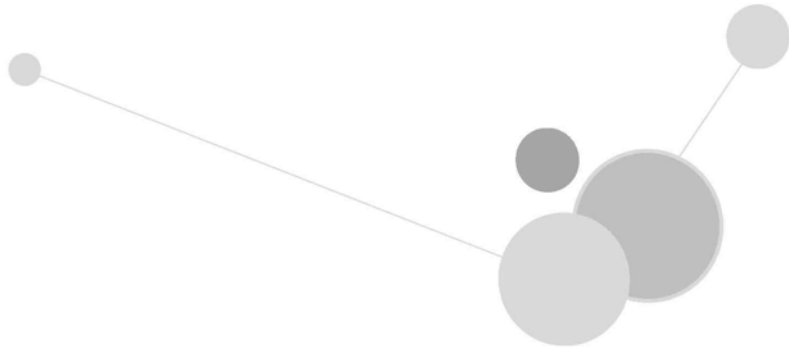
- 1.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관련 조례 및 정책9 3
- 2.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현황 34
- 3. 시사점 3

제4장 경기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

- 1. 문화예술교육 현안 및 대안35
- 2. 경기 문화예술교육 비전, 목표, 추진전략8 7
- 3. 경기 문화예술교육 추진전략별 세부과제2 8

제5장 요약 및 정책제언

- 1. 요약 13
- 2. 정책제언 16



제1장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문화적, 사회적 가치를 담은 문화예술교육의 역할 증대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을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으로 모든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으로 정의
- 동법 제3조2항에 따르면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향하며 균등하고 보편적인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여 국민의 문화적 권리실현 및 문화민주주의적 가치 창출에 기여 가능
- 21세기에는 기술, 감성, 이미지, 체험 등이 산업 발전의 동력이 되는 문화기반경제 시대가 대두되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 창의력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 확산

【시대별 산업 발전 동력】

구분	1980년대 제조업 기반 경제	1990년대 지식 기반 경제	2000년대 이후 문화기반 경제
발전동력	노동력의 질과 가격	기술과 품질	기술, 감성, 이미지, 체험

자료 : 황상훈 외(2015), 『대전시 문화예술교육 정책연구』, p.14.

- 또한 문화예술이 공동체성 회복, 주민 역량 강화에 기여하여 사회통합 등을 위한 중요한 기제로서 문화예술교육 역할 및 중요성 확대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 발표(2018.1)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 수립을 추진함
 - 2014년 2월에 수립한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2014~2017)」의 종료로 5개년 법정 종합계획 수립·추진함
- ‘지역 분권화’, ‘정책 체계화’, ‘수요 특성화’, ‘융합과 확장’을 문화예술교육 정책방향으로 제시

하고 비전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목표 ‘문화예술교육의 제도약: 문화예술교육의 지속 성장과 질적 제고’를 제시함

- ‘지역 기반 생태계 구축’, ‘수요자 중심 교육 다각화’, ‘문화예술교육 기반 고도화’라는 3대 추진전략과 이에 대한 10대 과제를 제시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 3대 추진전략 10대 과제】

3대 추진전략	10대 과제
지역 기반 생태계 구축	①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추진 체계화 ② 지역 문화예술교육 공간 및 자원과의 연계 강화 ③ 문화예술교육 협력망 활성화
수요자 중심 교육 다각화	④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확대 ⑤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속 확대 ⑥ 문화예술교육 지원 다각화
문화예술교육 기반 고도화	⑦ 기획 및 연구역량 강화 ⑧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역량 강화 ⑨ 문화예술교육 국제교류 활성화 ⑩ 가치확산 및 홍보강화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1),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 p.11.

■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 후속조치로 「경기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 수립 필요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의 수립)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협의를 거쳐 5년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을 반영한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을 2018년 내에 수립해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비전 2030」을 통해 지역과 연계된 문화예술교육 필요성 및 정책 제시

-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 의제의 대표과제 중 하나로 ‘문화권리 실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를 제시함
 - ‘문화권리 실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에서는 지역 문화예술교육 강화, 일상에서의 교육접근성 제고, 치유와 사회통합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세부내용으로 제시함
 -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에서는 지역 생활문화 증진과 지역 문화의 수요측면 보강 및 정책 추진 연계를 위한 정책 지표 개선을 세부내용으로 제시함

■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경기 기본계획 수립 필요

-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추진계획 구축을 위해 경기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문화예술교육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연구의 내용

○ 연구 범위

- 공간적 범위 : 경기도

- 시간적 범위 : 2018년 ~ 2022년

○ 연구 내용

- 중앙정부 문화예술교육 정책 및 현황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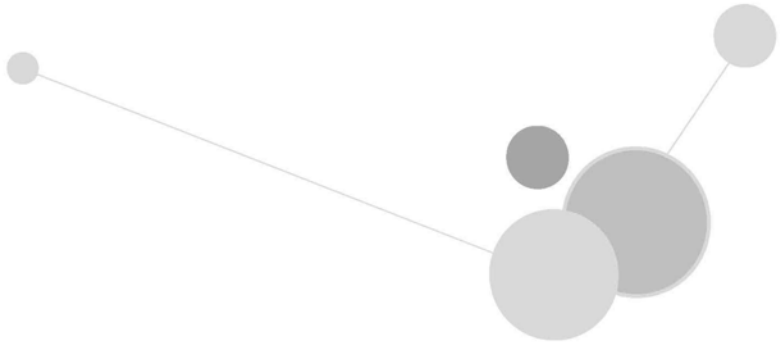
-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정책 및 현황 조사

- 경기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 수립

■ 연구 방법

○ 문헌조사를 통한 문화예술교육 관련 정책 현황 및 사례 조사

○ 관계자 및 전문가(실무자) 간담회를 통한 현장 의견 수렴



제2장 중앙정부 문화예술교육 정책 및 현황

1. 문화예술교육 관련 법 및 정책
2. 문화예술교육 현황

제2장

중앙정부 문화예술교육 정책 및 현황

1. 문화예술교육 관련 법 및 정책

1) 사회 문화예술교육 관련 법 및 정책

■ 사회 문화예술교육 관련 법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은 여야의원 13인(대표발의: 민병두 의원)에 의해 2004년 발의되었고, 2004년 12월 29일 공포된 후 시행령을 갖추어 2006년 6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됨
-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시행된 최초의 법률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해야 하는 근거가 되는 법임
- 이 법의 목적은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에 있음(제1조)
- 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은 모든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적 함양을 위한 교육이며, 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음을 명시하고 있음(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하며, 특히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실시할 책무가 있음(제5조의2)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문화예술교육지원에 관한 중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중합계획에 따라 매년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제6조 1~2항)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중합계획을 반영하여 지역문화예술지원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제6조 3항)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서 정의하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와 각종 시설 및 단체 등에서 행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외의 모든 형태의 문화예술교육 의미
- 문화예술교육시설(제2조제3호)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함
 - 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시설
 - 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 다.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중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시행령 제2조1항)
- ‘문화예술교육단체’라 함은 문화예술교육을 주된 기능의 하나로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이에 준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함(제2조제4호)
- ‘문화예술교육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정함(시행령 제2조2항)
 1. 최근 2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실시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교원 또는 문화예술교육사가 1명 이상 상근하여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장애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문화적 취약계층을 보호·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하여 사회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음(제24조)
-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4장(제20조~제26조)에서 교육시설 등 경영자의 임무,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민간 교육시설 등의 지원, 지역 사회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의 지원, 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한 학교시설의 이용, 경비의 지원 및 보조 등에 관해 명시하고 있음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은 문화예술교육시설과 단체의 범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구성 및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과 운영, 공공재원을 지원받은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단체에 대한 평가, 학교 및 사회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세부 지원사항,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문화예술사) 교육기관 지원과 운영, 국공립문화시설 내 전문인력 의무배치 등을 주요 골자로 함
- 시행령 제20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공립 교육시설의 경우, 1명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1.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공립 공연장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공립 박물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공립 미술관
 3.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
 4.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의 문화의 집
 5.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전수회관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및 시행령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교부, 예술관련 분야별 교수역량 교과목, 문화예술교육사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기능 등에 관한 규칙을 명시하고 있음
- 문화예술사의 예술분야별 교수역량 교과목은 시행규칙 제3조 관련 별표에서 다음과 같이 정함

【문화예술사의 예술분야별 교수역량 교과목】

분 야	교과목
국악	국악 교육론, 국악 교수학습방법(유아, 초등, 중등, 일반), 국악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극	연극 교육론, 연극 교수학습방법(유아, 초등, 중등, 일반), 연극 교육프로그램 개발
디자인	디자인 교육론, 디자인 교수학습방법(유아, 초등, 중등, 일반), 디자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사진	사진 교육론, 사진 교수학습방법(유아, 초등, 중등, 일반), 사진 교육프로그램 개발
무용	무용 교육론, 무용 교수학습방법(유아, 초등, 중등, 일반), 무용 교육프로그램 개발
음악	음악 교육론, 음악 교수학습방법(유아, 초등, 중등, 일반), 음악 교육프로그램 개발
미술	미술 교육론, 미술 교수학습방법(유아, 초등, 중등, 일반), 미술 교육프로그램 개발
공예	공예 교육론, 공예 교수학습방법(유아, 초등, 중등, 일반), 공예 교육프로그램 개발
만화·애니메이션	만화·애니메이션 교육론, 만화·애니메이션 교수학습방법(유아, 초등, 중등, 일반), 만화·애니메이션 교육프로그램 개발
영화	영화 교육론, 영화 교수학습방법(유아, 초등, 중등, 일반), 영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자료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문화예술교육을 포함하는 법

- 문화기본법

- 제7조(문화정책 수립·시행상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문화 활동 참여와 문화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고, 문화 창조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할 것’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제8조(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가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문화 인력의 양성과 문화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제2조(정의)의9 “에듀테인먼트란 문화콘텐츠를 유기적으로 복합시켜 기획 및 제작된 것으로 교육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 제12조(문화강좌 설치)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높은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강좌 설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문화예술을 보급할 수 있다.
- 제13조(학교 등의 문화예술 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직장의 학생·직원, 그 밖의 종업원의 정서와 교양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 및 직장에 학생·직원, 그 밖의 종업원으로 구성된 문화예술 활동 단체를 하나 이상 두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그 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그 활동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의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

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사업과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 을 할 수 있다.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 제6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제 38조(무형문화재의 교육 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학교문화예술교육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거나 「문화예술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문화강좌를 설치하는 경우에 무형문화재에 관한 교육이나 강좌가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제2조(정의) 박물관과 미술관을 정의함에 있어 자료의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 외에 도 교육에 목적을 둔 시설임을 밝히고 있음
- 제4조(사업) 박물관·미술관이 수행해야 하는 사업에는 ‘자료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 ‘자료에 관한 강연회·강습회·영사회(映寫會)·연구회·전람회·전시회·발표회·감상회·탐사회·답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등이 포함
- 제15조 대학 박물관과 대학 미술관이 수행해야 할 업무 중 ‘지역 문화 활동과 사회 문화 교육에 대한 지원’이 명시됨

- 평생교육법

- 제2조(정의)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 제18조(지역특화 공예품의 육성)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 공예문화산업이 지역의 문화관광·교육·체류 사업 등과 연계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사회 문화예술교육 관련 정책

○ 한국의 문화예술교육 정책 변화

-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은 2000년 국악 분야 '강사풀제' 시범 도입을 모태로 하며, 2005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함
- 사회문화예술교육 영역에서는 문화예술 접근성이 낮은 소외계층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며, 대표적으로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2006)', '국방부·법무부 협력사업(2005)' 등이 있음
- 2008년 사회문화예술교육 재원이 복권기금에서 국고로 전화되면서 재정안정성이 증대됨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중장기 전략(2007년~2011년)」을 수립, 2008년부터는 중장기 전략의 실행에 중점을 둬
-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관계부처 및 기관 간 협력 강화가 중시됨
- 2010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문화예술교육 발전방안」을 계기로 정책대상이 취약계층에서 일반시민으로 확대됨
- 2012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를 도입, 수준 높은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운영 중
- 2014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통해 지원대상을 학교 및 취약계층에서 전 국민으로 확장. 보편적 문화복지 및 사회·교육정책과 연계한 사회문화예술교육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추진 전략 제시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2014~2017)에 따른 새로운 정책방향】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4), 『2014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p.6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 변화 주요 내용】

구분	시기	주요 내용
태동기	2000년~2004년	예술강사지원사업 모태인 국악강사풀제 시범도입 (2000) 문화예술교육 TF 설치 (2003)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 문화부·교육부 공동발표 (2004)
도약기	2005년~2008년	법, 전담기구 설립 등 제도화 통한 지원정책 기초 마련 학교문화예술교육 중심의 정책지원 확장 기초단위 중심의 중앙지역 간 전달체계 구축 시도 '문화예술 체육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문화부·교육부 공동 발표 (2008)
확장기	2009년~2012년	일자리사업으로서의 성격 고착화와 예산 증대 16개 광역 시·도 중심의 전달체계 시스템 마련 특정계층 중심에서 일반시민으로 정책 대상 확대 및 지원방식 다변화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초·중등 예술교육 활성화 기본방안' 문화부·교육부 공동발표 (2010)
과도기	2013년~2017년	예술강사노조 설립 및 강사취우문제 관련 이슈 심화 중앙(진흥원)광역센터 간 갈등 심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 방향성 재정립에 대한 요구 강화

자료 : 최보연(2017),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 분석 및 개선방향』, pp.21~40.

- 2016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으로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부처협력 지원 사업', '문화예술교육 기획 프로그램', '문화예술교육 대상 확대 사업',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 등 다섯 가지 방향으로 추진 중임

○ 문화예술교육 5개년 종합계획(2018~2022) 주요 내용

- 여가시간의 확대에 따른 문화향유 및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수요 증대, 노인 인구 및 1인 가구 증가와 문화다양성 가속화에 따른 수요층 다양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변화에 걸맞는 문화예술교육 및 콘텐츠 개발 필요성 등 정책 환경의 변화 반영
- 2018년 수립된 문화예술교육 5개년 종합계획은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지역분권화', '정책 체계화', '수요 특성화', '융합과 확장' 등을 근간으로 한 정책방향을 제시
- **지역분권화**는 기존의 수직적 전달체계에서 지역 자율성을 고려한 협력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함. 중앙정부, 광역 지자체·광역재단으로의 체계와 함께 기초 단위의 구심점을 통해 연계성·확장성 확보를 추구
- **정책 체계화**는 감상(관람), 학습(교육), 아마추어 활동(동아리), 적극적 활용과 참여(활동, 봉사) 등 문화예술 향유 과정별 정책 영역간 연계 및 협력을 의미함
- **수요 특성화**는 전 국민 대상 정책으로 생애주기, 사회적·지역적 여건 등에 따른 수요를 고려한 정책 설계 방침을 의미함. 정책수요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방향 설계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융합과 확장**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범위인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제에만 한정하지 않고 미디어, 다문화, 인문 등 영역과의 융합·확장을 강조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정책방향에 따라 '지역 기반 생태계 구축', '수요자 중심 교육 다각화', '문화예술교육 기반 고도화' 등 세 가지 주요 추진전략을 수립함

【문화예술교육 5개년 종합계획 추진전략 및 주요 내용】

추진 전략	지역 기반 생태계 구축	①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추진 체계화 ② 지역 문화예술교육 공간 및 자원과의 연계 강화 ③ 문화예술교육 협력망 활성화
	수요자 중심 교육 다각화	④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확대 ⑤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속 확대 ⑥ 문화예술교육 지원 다각화
	문화예술교육 기반 고도화	⑦ 기획 및 연구역량 강화 ⑧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역량 강화 ⑨ 문화예술교육 국제교류 활성화 ⑩ 가치확산 및 홍보강화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1), 『문화예술교육 5개년 종합계획』, p.11.

- '지역 기반 생태계 구축' 관련 주요 사항

- (광역센터 역할 강화 및 기초단위까지 추진체계 구축) 2019년부터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거점기관으로 광역센터가 수행할 역할 강화. 지역 밀착형 추진이 가능하도록 2021년부터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 가능 구조 마련
- (광역센터 기능 구체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지역센터 간 역할과 업무를 구분, 명기함으로써 상호간 역할 중복을 방지하고 지역센터의 위상과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한 지원법 개정 추진
-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육성기반 체계화) 시도별 문화예술교육계획 수립 및 지원조례 제정 유도
- (지자체 대상 국고보조사업 통합개편) 개별 사업별 교부·정산 방식을 개편하여 광역센터의 자율적 기획과 재량권 확대. 중앙 단위에서 직접 추진하던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을 2019년부터 단계적 이관
- (지역 문화자원과 연계 강화) '꿈다락 토요 문화학교' 사업을 '꿈다락 문화예술학교'로 개칭, 지역 여건 고려하여 주중으로 점진적 확대. 지역 문예회관, 박물관, 미술관 등과 연계한 감상교육 확대. 지역 예술단체 연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확대
- (지역 중심 학교사회 통합 협력망) 지역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내 학교사회 통합한 문화예술교육 협력망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지역 내 학교, 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문화시설 등을 잇는 통합형 체계 구축

- '수요자 중심 교육 다각화' 관련 주요 사항

- (직장인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예술교육 확대) 직장 규모 및 성격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주부 등 청·중년 대상 문화예술교육 '행복한 우리동네 문예인 프로젝트' 운영

-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 은퇴를 맞는 50~64세 생애전환기 중장년층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신규 지원. 노인복지관 등 노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 내용 및 방법의 다각화
-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역할 강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새로운 공동체 형성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추진
- (치유와 사회통합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 심리적 상처 회복과 사회복귀가 필요한 국민을 위한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 확대 및 개선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이해 증진) 뉴미디어 기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가능한 전문인력 양성,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반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
- (통합·융합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 예술 장르 간 통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문화예술과 과학기술 등 연계 및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

- '문화예술교육 기반 고도화' 관련 주요 사항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개선) 기존의 교직(교수역량) 중심에서 벗어나 교육, 기획 및 관리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사 1급 양성
- (문화예술교육 국제교류 활성화)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ODA 사업 확대, 국제적 협력망 구축 등
- (문화예술교육 인식 확산)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가치 확산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홍보 강화

○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정책방향 및 의의

- 사회문화적으로 소외된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소년원생 및 교도소 수감자, 군인, 산업단지 근로자 등으로 수혜대상을 세분하여 각 집단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제공
-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을 기반으로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패러다임이 문화예술 기능전수 및 일회적 체험 차원에서 창의성, 사회성, 문화공동체 등을 위한 통합적 차원으로 확대되도록 유도
- 예술강사와 문화예술교육 매개인력을 새롭게 창출함으로써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예술 강사 및 교육수행단체의 평가·컨설팅 등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연계성을 확보함으로써 다양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 제공
- 문화예술교육 정책 거버넌스 구축으로 문화예술교육정책과 교육정책, 평생교육정책, 사회복지정책, 다문화정책, 교정행정, 노인정책, 여성정책, 여가정책 등과의 협력기반 확보

2) 학교 문화예술교육 관련 법 및 정책

■ 학교 문화예술교육 관련 법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서 정의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 집,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문화예술교육
- 제3장(제14조~제19조)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학교장의 임무, 교원의 연수와 연구 등 각종 활동에 대한 지원 제공, 학교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의 지원, 지역사회와의 지원체제 구축 등으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음
 - 제14조(학교의 장의 임무) 학교의 장은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국가의 시책을 고려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협조의 내용에 관하여는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등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학교의 장이 정할 수 있다.
 - 제15조(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장비, 문화예술교육사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민간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시설·장비, 문화예술교육사·프로그램 및 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연수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연구 및 각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7조(학교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아리활동·축제·학예회·발표회 등 학교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8조(지역사회와의 지원체제 구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학교가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를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 공연·전시·상영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9조(경비의 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은 제13조, 제14조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국공립 교육시설의 시설기준, 경비 지원대상 등에 관해 명시
 - 제13조(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국·공립 교육시설의 시설기준 등) 국·공립 교육시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문화예술교육사 및 교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
 2. 제1호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3. 제1호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과용도서 또는 교육자료
 4. 제20조에 따라 배치되는 문화예술교육사
- 제14조(경비지원의 대상 등) 사업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지원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학교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 나. 학교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조사 및 연구비
 - 다. 학교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교과용도서 구입 및 교육자료의 개발·보급비
 - 라.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비

○ 문화예술진흥법

- 제13조(학교 등의 문화예술 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직장의 학생·직원, 그 밖의 종업원의 정서와 교양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 및 직장에 학생·직원, 그 밖의 종업원으로 구성된 문화예술 활동 단체를 하나 이상 두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그 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그 활동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학교 문화예술교육 관련 정책

○ 추진 배경

- 2012년부터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인성 함양 교육의 핵심 사업으로 학교 예술교육의 중요성 대두
- 학교폭력 대책의 근본적 예방을 위한 인성 함양과 정서 순화, 문화적 감수성, 협업역량 강화 등을 위해 예술활동 활성화는 핵심 기제
- 2012년부터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수요 증대
- 예술동아리 참여 기회를 확충하여 토요일을 학업스트레스 해소와 창의성·인성 함양에 집중 활용
- 학생,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예술교육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 행복한 현재와 미래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역량 함양을 위해 예술체험 기회 확대 필요
 - ※ 심미적 감성 역량, 공동체 역량, 창의적 사고역량 등(2015 개정 교육과정)
 - i) 다양한 예술교육 기회 제공으로 예술적 잠재력 및 소양 개발
 - ii) 공교육 내 예술교육 기회 확산을 통해 교육 불균등 해소 도모
 - iii) 정규교육과정에 기반한 예술 교과수업 내실화 및 사교육비 절감

○ 주요 추진 과정

- 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부·문체부 업무협약 체결('08.10.)
- 예술중점학교 시범 운영 23개교 지정('10.5.)
-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초·중등 예술교육 활성화 기본 방안('10.7.)

- 학교체육·예술교육 내실화 방안('11.4.)
-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개선방안('14.9.)
- 「학교체육·예술교육강화 지원계획」 마련 및 시범사업 추진('15.10.)
- 악기 지원사업 시범 운영사업 확대 실시('16.3~)
- ※ ('15) 1,000교 (9개 시·도교육청) → ('16) 1,400교 (14개 시·도교육청)
- 지역연계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계획 마련('17.2.)
- ※ 지역연계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교육지원청 : ('15) 50개 → ('16) 100개 → ('17) 177개
- 학교 예술교육 정보제공을 위한 "학교예술교육 포털" 구축·운영('17.2.~)
- 전국학교예술페스티벌 개최를 통한 성과 확산('11~'17. 총 17회)
-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한 교육부·문체부 협업('17.8.~)
- 예술중점학교 지속 운영계획 마련('17.10.)

【2017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추진사업 주요 내용】



자료 : 교육부(2018). 『2018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기본 계획』, p.2.

○ 주요 추진 방향

- 학교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크게 '학교예술교육 내실화', '학생의 예술활동 기회 확대',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학교예술교육', '학교예술교육 지원 체계 구축' 등의 4대 중점 과제를 바탕으로 추진되어 옴
- 학생 누구나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1학생 1예술교육활동' 지원
- 다양하고 내실있는 예술교육 제공으로 행복한 학생성장 지원
-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예술교육으로 다각적인 지원체계 구축

【2018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추진 주요 내용】



자료 : 교육부(2018). 『2018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기본 계획』, p.5.

○ 주요 성과

- 학교예술중점학교 운영, 교원연수 지원, 콘텐츠 개발·보급 등을 통한 예술교과 수업 개선
- 소외지역 대상 예술교육거점학교·예술드림학교 운영, 악기 지원 등을 통한 예술 체험 및 적성 발현 기회 확대
- 대학, 예술단체, 공공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 학교예술교육중앙지원단 및 권역별 교육 기부 거점대학 운영, 학교예술강사 운영 지원 등 현장 지원 내실화

○ 한계 및 개선점

- 예술교육을 위한 교원의 지도 역량 강화 필요
- 소외지역의 물적·인적 인프라 부족 및 사회의 지속적 참여 체계 미흡
- 학교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시책사업 지원이 매년 축소됨에 따라 안정적 추진에 한계
 - ※ ('14) 177억원 → ('15) 170억원 → ('16) 136억원 → ('17) 130억원 → ('18) 99억원

○ 전달기구

- 교육부는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의 안정적·지속적 수행을 위해 2016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학교예술교육중앙지원단'으로 지정하여 학교예술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학교예술교육중앙지원단은 교육부의 학교 예술교육활성화 정책을 지원, 점검, 평가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및 성과 분석, 학교예술교육 지원 연구 및 자료 개발(교육활동 콘텐츠 개발,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학교예술교육 국제 세미나), '학교예술교육 포털' 구축·운영 및 홍보(공모전) 등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문화예술교육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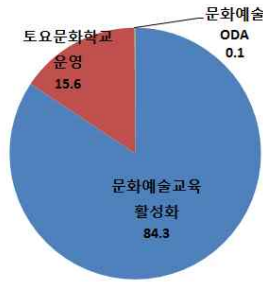
1) 사회 문화예술교육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 2017년 지원 현황

- 2017년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 지원 예산은 약 1,198억원 규모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토요문화학교 운영, 문화예술 ODA로 이루어짐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분야는 전체 예산의 84.3%(101,082백만원)로 가장 많은 비중 차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분야 예산 편성 비율(2017)】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7). 『2017년도 예술정책관 예산(일반회계) 집행계획』, pp. 25~27.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는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술꽃 씨앗학교', 유아문화예술교육지원 등의 학교 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소외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 교육 지원', '문화예술치유프로그램 지원' 등의 사회 문화예술교육으로 분류할 수 있음

【2017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분야 세부 사업 내용】

구분	수행주체	지원금 (백만원)	사업 내용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7개 시도	54,779백만원	초중고 9,000여 개교, 예술강사 5,000명 지원 등
예술꽃 씨앗학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4,000백만원	농산어촌 등 소외지역 소규모 학교 1학생 1예술활동 지원(55개교)
유아문화예술교육지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00백만원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연계 문화기반시설 활용관 프로그램 지원 등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17개 시도	2,550백만원	광역센터별 운영비 150백만원 지원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7,061백만원	아동·노인·장애인 복지관 500여 개소 대상 예술강사 지원, 군부대·교정시설·지역아동센터 등 대상 1,200여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문화파출소 운영 지원,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등
	한국문예회관연합회	900백만원	
	문화의집협회	300백만원	
	정책홍보	45백만원	

구분	수행주체	지원금 (백만원)	사업 내용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17개 시도	2,945백만원	지역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소외아동 청소년 오케스트라 교육 지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4,958백만원	심리적 상처를 가진 대상에 특화된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원
문화예술치유프로그램 지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544백만원	교육 운영기관 지원
총계			101,082백만원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7). 『2017년도 예술정책관 예산(일반회계) 집행계획』, pp. 25~27.

- 토요문화학교는 '문화예술기관 토요문화학교 운영'과 '기획공모형 프로그램 운영(민간보조)'로 구분

【2017 토요문화학교 운영 분야 세부 사업 내용】

구분	수행주체	지원금 (백만원)	사업 내용
문화예술기관 토요문화학교 운영	17개 시도	9,000백만원	지역 문화예술기관·단체에서 아동·청소년 및 그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학교 밖 주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기획공모형 프로그램 운영(민간보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6,952백만원	국공립기관·도서관·박물관·미술관 연계 프로그램 등 문화기반시설 연계 프로그램 지원, 가족합창·오케스트라 등 콘텐츠 기반 프로그램 지원, 예술감상교육 프로그램 등
	문예회관연합회	2,700백만원	
총계			18,652백만원

주 : 문화예술기관 토요문화학교 운영의 총사업비는 18,000백만원(국비 9,000백만원 / 시·도비 9,000백만원, 5:5매칭)임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7). 『2017년도 예술정책관 예산(일반회계) 집행계획』, pp. 25~27.

○ 2018년 지원 현황

- 2018년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교육 지원 예산은 1,246억원 규모로, 사회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지원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분야 내에서 이루어짐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분야는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 지역 문화예술교육 지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 등 4개 영역으로 구분됨
- 이 중 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 영역은 360억원 규모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분야 전체 예산의 29%를 차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분야 예산 편성 비율(2018)】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년도 예술정책관 예산(일반회계) 집행계획』, pp.21~23.

- 사회 문화예술교육 영역은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 운영, 예술동아리 교육 활동 지원,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 소외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 교육지원으로 분류되며, 이중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의 비중이 가장 큼
- 예산 편성에서는 지역 문화예술교육 지원과 토요문화학교를 따로 구분했으나 넓게 보아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점에서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성격을 띠고 있음

【문체부 사회 문화예술교육지원 영역 예산 세부 내역(2018)】

구분	수행주체	지원금 (백만원)	사업 내용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6,635	아동·노인·장애인 복지관 500여 개소 대상 예술강사 지원 군부대·교정시설·지역아동센터 등 대상 1,200여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문화파출소 운영 지원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등
	한국문화예술포럼	900	
	문화의집협회	300	
	정책홍보	43	
소계		27,878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 운영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420	중년세대 대상 문화예술교육 운영기관 10개소 지원 등
예술동아리 교육활동 지원	17개 시·도 대상 공모	1,500	지역 기반 아마추어 예술동아리 대상 교육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544	학교폭력피해학생, 범죄피해자 등 심리적 상처를 가진 대상에 특화된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운영기관 97개소
소외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 교육지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4,458	46개소 교육 운영기관 지원
총계		36,80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년도 예술정책관 예산(일반회계) 집행계획』, p.22.

【문체부 지역 문화예술교육지원 영역 예산 세부 내역(2018)】

구분	수행주체	지원금 (백만원)	사업 내용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17개 시·도	2,550	광역센터별 운영비 지원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17개 시·도	2,945	지역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400여개 지원 등
유휴공간 활용 문화예술교육센터 지원	2~3개 자치단체 공모	4,000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 거점형(광역, 기초권역) 1개소, 밀착형(생활권) 1~2개소
총계		9,495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년도 예술정책관 예산(일반회계) 집행계획』, p.22.

- 굼다락 토요문화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등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등이 함께 주관하는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임
- 2016년 사업시행기관별로 17개 시·도와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지역 연계사업,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국공립기관 연계 프로그램, 미술관·박물관·도서관 연계 프로그램, 가족오케스트라·합창 프로그램, 꼬마작곡가 등의 프로그램,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예술감상교육 등 총 1,000여 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 약 70,000여 명이 참여했음

【문체부 토요문화학교 운영 영역 예산 세부 내역(2018)】

구분	수행주체	지원금 (백만원)	사업 내용
지역자율형 프로그램 운영 (자치단체 경상보조)	17개 시·도	9,000	지역 문화예술기관·단체에서 아동·청소년 및 그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학교 밖 주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기획공모형 프로그램 운영(민간보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포럼	9,350	국·공립기관·도서관·미술관 연계 프로그램 등 문화기반시설 연계 프로그램 지원 가족합창·오케스트라 등 콘텐츠 기반 프로그램 지원, 예술감상교육 프로그램 등
정책홍보		2	-
총계		18,352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년도 예술정책관 예산(일반회계) 집행계획』, p.23.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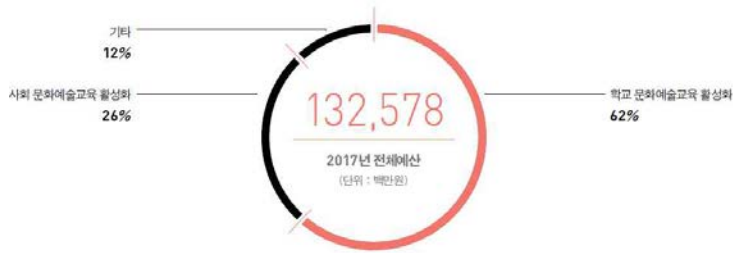
○ 지원 현황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2005년 제정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설립되어 문화예술교육 관련 주요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사업 영역을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시민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연수, 문화예술교육

R&D, 국제교류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 2017년도 기준 전체 예산은 1,325억원 규모로,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62%, 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26%가 편성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산 편성 비율(2017)】



자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8), 『2017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연차보고서』, p.9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산 내역(2017)】

전체예산		2017년	132,578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예술강사 지원사업	48,966	82,634	(62%)
	예술강사 지원사업(인간교육재정)	28,518		
	예술꽃 씨앗학교	4,000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	1,000		
문화예술교육사 활용 지원	150			
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	27,061	34,563	(26%)
	소외 아동 오케스트라 지원	4,958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	2,544		
기타	도요문화학교 운영	6,952	15,381	(12%)
	문화예술교육 ODA	105		
	평창문화올림픽 지원	1,810		
	가부금 사업 : 기업사회공헌 사업	179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운영지원	6,498		
	자체수입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발급	34		
	기타사업(공무원 연수 등)	3		

자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8), 『2017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연차보고서』, p.9

○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 내용

- 청장년 및 노인 대상 문화예술교육으로 지속 가능한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추구
-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노인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문화과학교 운영사업,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협력운영,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사업, 농산어촌 이동형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 명예교사 등으로 구분됨

【진흥원 시민 문화예술교육 사업 세부 내용】

구분	사업명	사업 내용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아동복지시설 문화예술교육 지원	전국 143개 아동복지시설에 6개 분야(국악, 무용, 미술, 연극, 영화, 음악) 예술강사 지원, 교육지원금 및 기자재 지원
	노인복지관 문화예술교육 지원	노인복지관에 5개 분야(무용, 미술, 사진, 연극, 음악) 예술강사 지원, 노인문화예술교육 '청춘계' 진행
	장애인복지시설 문화예술교육 지원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와 협력 하여 장애인 복지시설에 6개 분야(국악, 무용, 미술, 연극, 영화, 음악) 예술강사 지원, 가족, 친구와 함께 하는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실시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운영·관리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 점검, 관계자 간담회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추진 (사)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와 협력,
노인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노인 영상 미디어 문화예술교육 지원	지역미디어센터를 거점으로 노인들이 스스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16개 미디어센터 17개 프로그램 237명 참여)
	치매 어르신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 및 기초자료 마련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군부대 문화예술교육 지원	국방부 및 각 군 본부와 협력, 국군장병의 자기계발과 상호유대감 강화를 돕는 프로그램
	교정시설, 치료감호소 문화예술교육 지원	법무부와 협력 하여 교정시설 및 치료감호소 재소자들의 안정적 수용생활과 교화를 돕는 프로그램
	소년원학교, 보호관찰소 문화예술교육 지원	법무부와 협력하여 보호처분,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받은 청소년의 인성함양, 사회성 개발 등을 돕는 프로그램
	근로자 문화예술교육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력, 산업단지 및 공단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방과 후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협력하여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이용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 지원
	학교 밖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	가출, 자립, 탈학교 등으로 공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이 예술체험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관계 회복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등과 협력
	지역아동센터 문화예술교육 지원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과 협력 추진 통일부 및 남북하나재단과 협력,
북한이탈주민 문화예술교육 지원	북한이탈주민(민간대안학교 및 방과 후 공부방 청소년, 하나원 입소자) 대상으로 문화예술 체험 및 창작 활동 기회 제공	
상이군경 문화예술교육 지원	보건복지 및 대한민국상이군경회와 협력, 국가유공상이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전국 보훈복지문화대학 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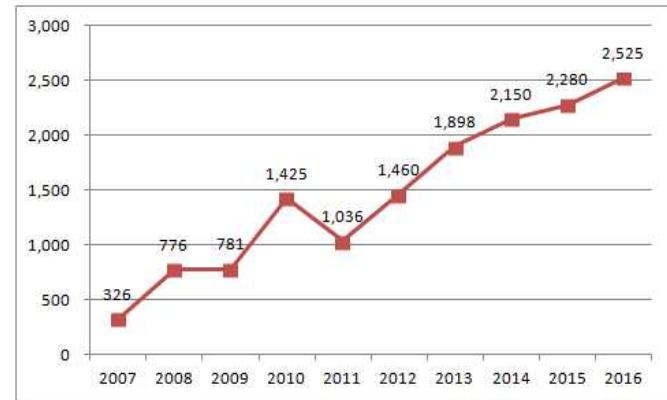
구분	사업명	사업 내용
		지원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운영 관리	교육시설, 운영단체, 참여자 등 다양한 주체의 이해도 제고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현장 모니터링, 워크숍 등 진행
문화과출소 운영사업	-	경찰청 산하 전국 9개 치안센터를 활용하여 지역주민 대상 문화예술교육 및 주민자율 문화예술활동 지원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	'마음치유 봄처럼' 문화예술치유 지원	학교폭력 피해 학생, 군대 부적응 병사, 각종 범죄 피해자 등에 특화된 프로그램 지원. 상담·심리적 활동을 기반으로 미술, 음악, 연극, 무용, 통합 등 소규모 그룹 프로그램 지원
	복합의상피해자 대상 문화예술치유 지원	
	문화예술치유 기획형 시범 운영 지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협력운영	-	지역밀착형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사업	국·공립 연계 프로그램/ 박물관 연계 프로그램/ 미술관 연계 프로그램/ 도서관 연계 프로그램/ 가족오케스트라·합창 프로그램/ 청소년X예술가 프로그램/ 건축문화 프로그램/ 주말문화여행 프로그램/ 꼬마작곡가 프로그램/ 어린이는 무엇을 믿는가 프로그램/ 주말예술캠퍼스 프로그램/ 지역연계 프로그램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등과 함께 하는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매주 토·일요일 아동·청소년 및 가족들이 문화예술을 매개로 소통하고 여가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함
농산어촌 이동형 문화예술교육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문화소외지역 아동, 노인 포함 지역주민을 직접 찾아가는 프로그램
문화예술 명예교사	특별한 하루	저명 예술가나 문화계 인사가 '명예교사'로 참여해 어린이, 청소년, 일반 시민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나누는 강연형 프로그램.

자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8). 『2017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연차보고서』, pp.50-93.

■ 사회문화예술교육 시설 현황

- 2016년 기준 사회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한 시설 수는 총 2,515개로, 전체 교육수혜기관 11,900개 중 21%로 파악됨
- 2007년 326개에 불과하던 수준에서 2010년을 기점으로 대폭 증가했다 축소된 뒤, 2011년부터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임

【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 참여 수혜시설/기관 수 증감 추이(20072016)】



자료 : 최보연 외(2017).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 분석 및 개선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45.

- 2016년 수혜시설/기관 세부내역에서 사업별 참여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참여시설이 1,117개(44%),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참여시설이 608개(24%),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참여시설이 406개(16%)로 나타남

【사회 문화예술교육 수혜시설/기관 세부내역(2016)】

구분	시설/기관 수	합계
복지기관 지원	아동 145	608
	노인 213	
	장애인 250	
부처 간 협력 지원	군 장병 309 교정시설 48 소년원학교 11 등 포함	1,117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	(경찰청)문화과출소 9개소 및 치안센터 (국방부)국군병원 (교육부)wee프로젝트 관련시설 (여성가족부)보호시설 등	77
지역 특성화 지원		406
문화예술교육 기획사업 지원 (농산어촌 이동형 문화예술교육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창의예술캠프 '우락부락', 문화예술 명예교사 '특별한 하루')		307
계		2,515

자료 : 최보연 외(2017).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 분석 및 개선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45.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6 문화예술백서』, pp.454~459.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8). 『2017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연차보고서』, p.62.

- 문화과출소

-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가 경찰청과 협력하여 전국 치안센터 중 9곳을 선정, 노후된 유희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예술교육에 활용하기 위해 조성
- 서울 강북(수유6치안센터), 전북 덕진(금암치안센터), 전남 여수(안산치안센터), 경기 군포(산본치안센터), 강원 춘천(동면치안센터), 대구 달서(도원치안센터), 제주 서부(서문치안센터), 울산 남부(신선치안센터), 충북 청원(사천지구대) 등 9개 치안센터를 문화파출소로 운영 중
- 각 문화파출소별로 운영단체가 선정되어 단체별로 특징 있는 프로그램 운영.(문화예술교육 및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 2012년 시작된 이래 참여기관 및 프로그램 수의 지속적인 증가를 보임
- 2017년 기준 전국 140개 기관·단체에서 184개 프로그램 운영 중
- 국·공립 연계 프로그램: 총 12개 기관(국립민속박물관, 전쟁기념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재)정동극장, 국립합창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사무용단,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한국영상자료원, 소마미술관, 광주문화예술회관, 광주시립발레단, 국립제주박물관)
- 박물관 연계 프로그램: 전국 31개 박물관
- 미술관 연계 프로그램: 전국 18개 미술관
- 도서관 연계 프로그램: 전국 23개 도서관(기본형 19개, 시범형 4개)

2) 학교 문화예술교육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관련 사업은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이라는 명칭 하에 추진되고 있음
- 대표적 사업은 예술강사 지원사업과 예술꽃 씨앗학교 지원사업으로 볼 수 있으며, 예술꽃 새싹학교 지원사업,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사업,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창의예술캠프 '우락부락', 고3·수험생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상상만개' 등 총 7개 사업으로 구분됨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사업 세부 내용(2017년 기준)】

구분	세부 사업명	사업 내용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 초·중·고등학교에 예술강사를 파견하여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지원 - 2017년도 기준 전국 8,628개교에 국악 등 8개 분야 예술강사 5,237명 지원
	교육기자재 지원	- 예술강사 지원사업 중 해당 분야 최초 선정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기자재 지원 - 2017년 총 1,283개교 지원

구분	세부 사업명	사업 내용
예술꽃 씨앗학교 지원사업	예술꽃 씨앗학교 지원	- 전교생 400명 이하 농산어촌 등 문화취약지역 소재 소규모 학교 대상 지원 - 공교육에서의 문화예술교육 효과와 활용도를 높이고, 우수모델을 창출하여 지역 문화예술교육 거점기관으로 육성하는 사업 - 총 55개교
	예술꽃 씨앗학교 평가·컨설팅단 운영	- 매년 평가 컨설팅 및 사업현황 점검
예술꽃 새싹학교 지원사업	예술꽃 새싹학교 지원	- 예술꽃 씨앗학교 지원이 종료된 학교를 대상으로 문화소외지역 학생들의 지속적 문화예술교육을 지원. - 민간 자원과 연계 - 총 10개교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사업	꿈의 오케스트라 거점기관 운영지원	- 기초 자치구별로 오케스트라 교육의 거점기관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청소년들의 오케스트라 활동 확대
	꿈의 오케스트라 네트워크 활성화	- 거점기관 관계자(음악감독, 교육강사, 행정인력 등) 간 교수법, 사례공유 등을 통한 네트워크 형성 및 상호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진행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유아 문화예술교육 공모 지원	-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실현을 위해 지역거점 문화기반 시설을 매개로 유아 대상 프로그램 개발, 운영.
	유아교사 대상 문화예술교육 연수 지원	- 기 개발된 유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교육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교사 대상 연수 지원
창의예술캠프 '우락부락'	-	- 아동, 청소년들에게 새롭고 흥미로운 예술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 방학기간 동안 일상을 벗어나 넓은 공간에서 예술가와 함께 놀며 예술적 감성을 발견하게 하는 캠프 - 2014년부터 지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춘 캠프를 기획, 운영해 옴
고3·수험생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상상만개'	-	-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자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8), 『2017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연차보고서』, pp.50~93.

○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현황

- 전국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교육부 인가) 중 선정된 8,628개교에 예술강사 5,237명 지원
-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 등 8개 분야
- 2016년 기준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참여학교 수는 초등학교 5,690개교(94.8%), 중학교 2,207개교(68.8%), 고등학교 975개교(41.4%), 기타학교 155개교(54.5%)로, 초등학교에 집중되고 고급이상향될수록 참여율이 현저히 낮아짐
- 분야별로는 국악의 참여도가 가장 많고 사진이 가장 적음
- 지역별로는 경기와 서울의 참여 비중이 높음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분야별 참여 현황(2017)】

지원분야	학교수	강사수	수업시수
국악	4,633	2,090	601,410
연극	2,088	881	245,786
영화	420	210	47,899
무용	2,131	1,108	301,421
만화·애니메이션	903	399	104,280
공예	626	272	67,324
사진	313	100	22,399
디자인	424	177	38,440
총계	11,538	5,237	1,428,959

※ 학교 수 : 교육 분야별 복수지원 제외 시 지원학교는 8,628개교임

자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8). 『2017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연차보고서』, p. 20

【2018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추진 현황】

학교 수 (개교)	지원시수 (시수)	강사 수 (명)	수혜자 수 (만명)
8,344	1,429,549	5,282	237

자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www.arte.or.kr/index.do).

【2018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지역별 참여 학교 수】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1,031	526	333	257	364	228	168	62	1,412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448	300	513	611	606	615	726	144	8,3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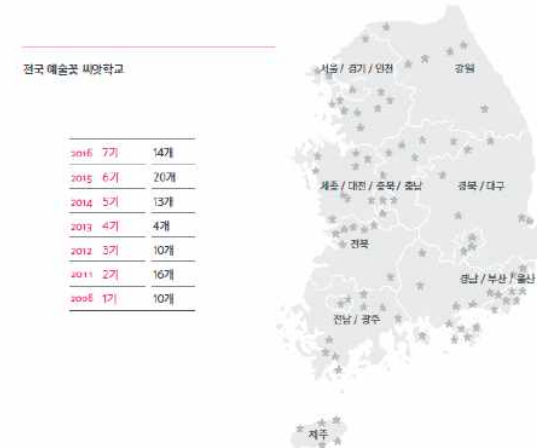
자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www.arte.or.kr/index.do).

○ 예술꽃 씨앗학교 지원사업 현황

- 2008년부터 문화적 소외지역의 소규모 학교들을 대상으로 4년 동안 집중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
- 감성이 풍부한 초등학교 시절부터 학생들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을 기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교육 차원에서 모든 학교에 확산될 수 있는 우수 모델로 자리 잡음
- 2008년 1기(2008~2011) 10개교, 2011년 2기(2011~2014) 16개교, 2012년 3기(2012~2015) 10개교, 2013년 4기(2013~2016) 4개교, 2014년 5기(2014~2017) 13개교, 2015년 6기(2015~2018) 20개교, 2016년 7기(2016~2019) 14개교 등 총 87개교 지원

【예술꽃 씨앗학교 수혜자 수, 지원현황, 전국 분포도】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수혜자 수	1,718	1,630	1,555	3,528	3,634	4,115	6,022	7,408	7,637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6 문화예술백서』, p. 449

■ 교육부 학교예술교육중앙지원단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 교원 역량 제고 지원
 - 학교예술교육지원사업 운영 관련 분야별, 권역별 맞춤형 컨설팅
 - 학교예술교육 지원 콘텐츠 개발 및 우수사례 공유
- 학교예술교육 연구 및 지원체계 구축
 - 예술중점학교 운영 실태 분석 및 모델 개발
- 학교예술교육 지원사업 성과 분석
 -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의 질적 제고를 위한 성과 평가 및 만족도 조사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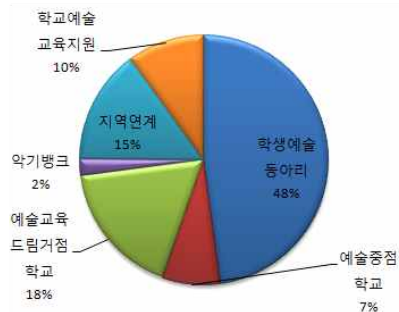
【2018 학교예술교육중앙지원단 지원사업 현황 (단위: 교, 지원교육청, 백만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예산
동아리 (학교 수)	106	71	54	61	37	34	29	9	129	66	55	67	60	81	81	82	28	1,050	4,770
중점학교 (학교 수)	3		3	2		1			12	1	1	1			2	2	1	29	750
드림거점학교 (학교 수)	6	5	5	5	5	5	5	5	7	5	5	5	5	5	5	5	5	88	1,760
악기뱅크 (지원예산)	20	10	10	10	10	10	10	10	35	10	10	10	10	20	10	10	10	215	215
지역연계 (지원교육청 수)	11	5	4	5	2	2	2	1	25	17	10	14	14	22	23	18	2	177	1,476
학교예술활동 활성화 지원: 컨설팅 및 성과분석																			500
시·도교육청별 학교예술교육 페스티벌 운영 내실화 지원																			500

자료 : 교육부(2018). 『2018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기본 계획』, p. 9

- 사업별 예산규모는 2018년 기준 총 9,971백만원으로, 학생예술동아리 4,770백만원, 예술중점학교 750백만원, 예술교육드림거점학교 1,760백만원, 악기뱅크 215백만원, 지역연계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1,476백만원, 학교예술교육지원(컨설팅 및 성과분석, 학교예술교육페스티벌) 1,000백만원으로 구성됨

【2018 학교예술교육중앙지원단 예산 구성】



자료 : 교육부(2018). 『2018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기본 계획』, p. 25

○ 학생예술동아리 지원

- 기존 음악·연극 중심에서 조소·염색·디자인 등 미술 분야로 다양화 추세
- 예술분야별 전문 인력 및 프로그램 지원 확대
- 시·도별 학교예술교육 페스티벌 개최로 학생들의 예술활동 참여 기회 확대 및 우수 활동사례 공유

【학생예술동아리 지원 세부 내역】

구분	지원대상	예산(백만원)
오케스트라	자생 운영교('11~'14 지정) 500개교	2,500
뮤지컬	자생 운영교('13~'14 지정) 180개교	720
연극	자생 운영교('14 지정) 300개교	1,200
미술	신규 운영교('18) 70개교	350
합계		4,770

자료 : 교육부(2018). 『2018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기본 계획』, p. 25

○ 예술중점학교 운영

- 중·고등학교에 예술중점과정 운영을 위한 학급 개설
- 예술중점 교육과정 시수를 확보하고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운영
- 29개교 45학급 운영(11개 시·도교육청)
- 학급당 운영비 2,000만원 지원.(기존 1,500만원)

○ 예술드림거점학교 운영

- 문화소외지역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관내 학교가 연계한 학교예술교육 인프라 구축
- 기존 예술드림학교(51개교)와 예술교육거점학교(37개교)를 2018년부터 '예술드림거점학교'로 통합 운영
- 예술교육 전문가, 지역 예술가 등을 활용한 컨설팅, 세부 사업별 담당자 중심 성과보고회 등을 통한 우수사례 공유
- 학교급 간 연계 또는 학교 간 연계, 예술교육 유관기관과 연계 등을 통해 체험형 예술교육으로 다양화하고 연속적인 예술교육 제공
- 학교당 2,000만원 총 88개교 지원

○ 악기 지원센터 및 악기뱅크 운영

- '1학생 1악기 연주' 활성화를 위해 단위학교의 악기 구입 지원 및 관리,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악기뱅크 사업 총괄
- 학생문화센터, 학생문화회관,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등 종합적 역량을 갖춘 기관을 악기뱅크로 지정, 운영
- 악기뱅크 이용 학교는 2017년 1,400개교에서 2018년 1,800개교로 증가

- 예술인재 육성 꿈사다리 운영
 - 예술적 재능이 잠재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저소득층 중학교 1학년생 중 선발
 - 음악 및 미술 분야 총 30명
 - 중2부터 고3까지 5년간 맞춤형 교육비(30만원), 꿈사다리 장학금, 대학생 멘토링 등 지원
- 지역 교육기부거점대학 운영
 - 교·사대, 예술대학 중심 권역별 예술교육기부 거점대학 선정·운영
 - 2017년 체육예술거점대학: 대경대(경상권), 춘천교대(강원·춘천권), 전남대(전라·제주권)
 - 지역사회 연계 교육기부 체험프로그램 제공 플랫폼 구축 및 우수모델 확산
- '학교예술교육포털' 운영
 - 학교예술교육 관련 사업 우수 결과물, 국내외 연구자료 등에 대한 지속적 축적 및 공유
 - 학교예술교육 콘텐츠 제공 및 예술교육 성과 홍보

3. 시사점

■ 수요자 특성 변화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 문화예술교육 대상이 '소외된 취약계층' 중심에서 '전국민'으로 확장되고, 문화예술 향유의 목적과 방향성이 일상화·보편화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임
- 공급 주도 정책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관점이 변화되면서 생애주기별 수요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근로시간 단축, 노인 인구 및 1인 가구 증가 등 최근의 사회적 변화는 문화예술교육 및 콘텐츠 개발에 있어 더욱 창의적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 지역 주도의 자율적 교육 체계 확립 필요성

- 기존의 수직적 구도를 탈피하여 지역의 자율성을 고려한 문화예술교육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여 기초 단위의 구심점을 통해 광역 지자체·광역 단체와 중앙정부가 연계성·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강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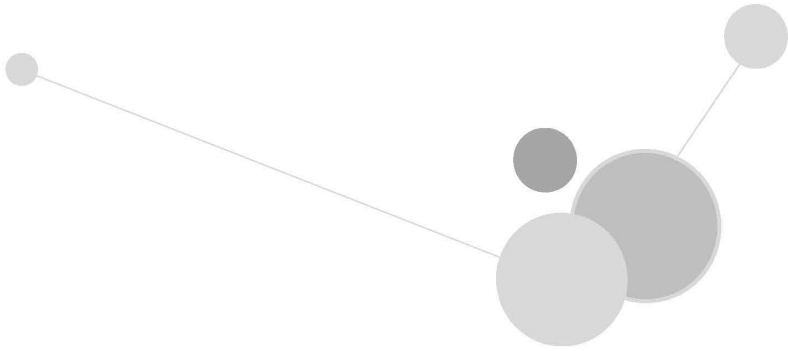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 강화

○ 창의적 콘텐츠 개발 및 융합·확장을 위한 관점 전환

- 인터넷, 모바일, 인공지능 등 기술적 혁신이 두드러지는 추세를 감안하여 문화예술교육 또한 기존의 관성적 프로그램에서 탈피하여 창의적 융합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
- 사회문화예술교육 및 학교문화예술교육에서 국악, 오케스트라 등 기존의 관성적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한계가 드러남
- 영화, 애니메이션, 뉴미디어 등 다양한 예술분야의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인력 확충의 필요성이 대두됨

○ 교육인력의 전문성 확대 및 안정적 지원 필요성

- 학교 예술강사 지원의 경우, 학교 수 및 강사 수에서 국악, 연극에 과도한 편중이 드러나고 있음
- 영화, 사진, 디자인 등 다른 예술분야도 균형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사의 지위 및 처우 개선,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은 안정적 문화예술교육의 전제 조건이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제3장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정책 및 현황

- 1.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관련 조례 및 정책
- 2.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현황

제 3 장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정책 및 현황

1.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관련 조례 및 정책

1) 사회 문화예술교육

■ 문화예술교육 관련 조례

○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 경기도는 2009년 12월 31일 제정된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진흥조례」 이후 7차례 개정을 거쳐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를 마련하여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이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주민의 문화예술교육과 체험을 확대하여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
- 도지사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을 매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이 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제3조)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9조에 따라 '경기도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를 둠(제3장)
- 도지사는 문화예술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제4장)
- 문화예술교육 기반 강화를 위한 도지사의 임무를 명시하고 있음(제5장)
- 도지사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재교육 등을 최대한 지원해야 하며, 인력채용의 기회확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함
- 도지사는 도내 각종 박물관, 도서관, 문예회관, 문화의 집 등 공공문화기반시설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문화기반시설과 학교의 문화예술교육이 연계·협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경기도 시·군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 광명시는 2013년 「광명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센터의 업무, 위탁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강료 징수, 시설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성남시는 2016년 제정된 「성남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를 통해 '성남시문화예술교

육지원센터'의 운영과 업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민간 교육시설 등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사업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정책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 시·군 문화단체 네트워크 및 매개자(예술강사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예술강사·기획자 등 매개자 학습지원 및 센터 운영

○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도민에게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 경험 기회를 제공(2017년 기준 693회 교육, 13,222명 참여)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 아동·청소년과 가족참여형 '학교 밖 주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으로 문화예술 소양 함양 및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기여

○ 문화예술교육 온라인 플랫폼 운영

-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2018년 5월부터 기존의 문화예술교육 전문웹진 '지지봄'을 홈페이지(ggarte.ggcf.kr)에 통합, 개편하여 운영 중임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경기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운영단체의 월간 수업일지 등 다양한 콘텐츠의 효율적 제공으로 프로그램 운영 강화 및 체계적 관리 구축

2) 학교 문화예술교육

■ 문화예술교육 관련 조례

○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 종합계획을 매 4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함(제6조)
- 교육감은 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위원회의 협의·조정을 거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결정하며,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립하고 이를 학교장에게 통보하며, 그 결과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제8조)
- 경기도교육감 소속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위원회'를 둠(제9조)
- 교육감은 교육지원청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협의회'를 두며, 필요할 경우 학교에 진흥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음(제15조)
- 진흥협의회는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업무 추진, 학교문화예술교육의 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 지역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와 상호 협력체계 위한 연계망 구축, 그 외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임
- 학교문화예술교육 기반 강화를 위한 교육감의 권한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제17조(진흥 사업)

①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에서 일정시간 이상의 지속적 문화예술교육 실시
2. 학교문화예술교육 자료의 개발과 보급
3. 학교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학습·체험 프로그램 지원
4.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사연수
5.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사·학생·문화예술인 동아리 활동 지원
6.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문화예술교육 진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경기도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문화예술교육주간을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연구·발표 등 학술행사
2. 지역적·국제적인 문화예술교육 교류행사
3.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 공연·전시·상영 등 행사
4.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체험행사

■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정책

○ 경기도교육청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5~2018)」을 수립하고 주요 추진전략으로 예술교육공동체 기반 구축, 교육과정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등 3개 과제를 제시

○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한 2018년도 과제별 추진 계획 중 강조되는 중점 사항은 '예술 공감터' 지원 확대, '예술공감학교' 구축, 학생 주도 문화예술 활동 확산 등임

- '예술공감터' 조성

- 문화예술교육 공동체 기반 구축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 학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전시, 공연 등을 위한 상설 공간 구축
- 예술 기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복합문화예술체험 공간 조성

- '예술공감학교' 구축

- 유휴교실을 활용해 시각·청각·공연예술을 위한 예술체험 공간 조성
- 기초에서 심화까지 미적 경험에 기반한 예술체험 프로그램 운영

- 학생 주도 문화예술 활동

- 학생이 자발적으로 기획·참여하는 과정 중심의 학교문화예술교육 확산
- 학생 주도 예술 체험 '꿈이음아트' 확산으로 자존감, 배려, 존중의 인성 함양

- 교육과정 연계 예술중심 융합수업 모델 확산

- 수업 사례 나눔 워크숍, 학습공동체 지원 등 학교문화예술수업 역량 강화
- 학생과 함께하는 교사 예술동아리 운영 지원

- 마을과 함께하는 '어울림한마당' 운영

- 학생과 지역사회의 문화예술자원이 함께 기획하고 참여하는 마을 축제 운영
- 지역사회 예술기관, 예술가, 예술교육가와의 협력체계 구축

-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1·1·1 예술교육' 프로그램 확산

- 초·중·고 학교생활 중 1인 1기(공연, 미술, 연주 등) 예술체험기회 제공 및 1예술동아리 참여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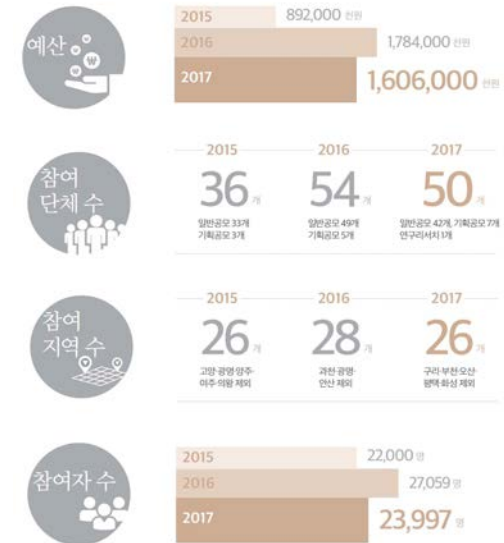
2.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현황

1) 사회 문화예술교육

■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문화예술교육 사업 현황

-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고 경기문화재단이 설립한 광역 단위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임
- 주요 사업은 경기 지역 문화예술교육 저변 확대를 위한 '기획지원사업', 중앙 단위 위탁사업 운영 활성화를 위한 '위탁사업'으로 구분됨
- 기획사업
 - 자율학습모임 기획 지원사업 '시시하지만 즐거운 일'
 - 문화예술교육 관련 사업 참여 경험이 없는 도내 신진 기획자, 예술가, 교육자, 일반인 등의 자율학습 활동 지원('17년 참여지역 수 9곳, 선정프로그램 10개, 참여인원 39명, 총 지원금액 17,395천원)
 - 프로젝트모임 기획 지원사업 '틈새 프로젝트'
 - 도내 중견 전문단체 프로젝트·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활동 지원('17년 선정 수 6건, 참여자 37명, 총 지원금 29,000천원)
 - 매개자 역량강화 워크숍 '상상력의 징후'
 - 문화예술교육 신규 매개자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워크숍(경기도 거주 혹은 경기도를 활동 기반으로 하는 예술가 대상)
 - 문화예술교육 비평웹진 '지지봄봄' 발행
 - 국내외 문화예술교육 비평 관련 웹진 및 비평지 발행
 - 경기문화예술교육 홍보 및 아카이빙
 - 센터 홈페이지, SNS, 블로그를 통한 홍보 및 문화예술교육 온·오프라인 자료 관리
- 위탁사업
 - 경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원사업
 - 경기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지역읽기, 마음 잇기'

【경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2015~2017 운영 현황】



자료 :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2017). 『2017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결과자료집』, p. 146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2015~2017 운영 현황】



자료 :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2017). 『2017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결과자료집』, p.147.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2018년 사업 및 예산】

사업 구분	사업 내용	예산(천원)
교육지원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관리 홈페이지 운영 	150,000
매개자 발굴 육성 기획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진, 청년 매개자 및 콘텐츠 발굴을 위한 프로젝트 모임 지원 네트워킹, 현장 모니터링, 컨설팅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 	39,400
비평연구 및 교육콘텐츠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교육 비평웹진 '지지봄봄' 제작 및 배포 매개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기획, 운영 문화예술교육 협력 체계 구성 및 네트워킹 	102,000
홍보 및 아카이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교육 자료 구입 및 아카이빙 센터 결과자료집 발행 및 배포 관리 	8,600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 지역 문화기반시설, 공공시설에서 운영되는 양질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일반공모 공고 및 선정, 단체 및 기관, 지역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관리 참여인력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1,500,000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참여 기반 조성 교육프로그램 및 지역문화예술교육 연구형 사업 지원 	468,000
합계		2,268,000

자료 :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내부자료.

■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시설 현황

- 2017년 현재 경기도 내 문화시설은 총 504개로, 공공도서관 244개, 박물관 133개, 미술관 52개, 문예회관 35개, 문화원 31개, 문화의집 9개 등임
- 경기도가 보유한 504개 시설은 전체 문화시설의 19%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문화시설을 보유하고 있음
- 인구 10만명 당 문화시설 수는 4개로 전국 지자체 평균 5.1개보다 적으나, 면적 100km2 당 시설수는 4.9개로 전국 평균 2.6개를 상회함
- 경기 지역 소재 평생교육기관 수는 총 893개로, 언론기관부설(146개)과 특수대학원(127개)의 비중이 높음

【지자체별 문화자원 통계 (단위= 백만원, 개)】

구분	인구10만명당 문화예산	인구 10만명당 문화시설수	면적 100km2 당 문화시설수
전체	6,330.8	5.1	2.6
서울	3,911.4	3.7	60.3
부산	5,483.1	2.8	12.6
대구	5,055.3	2.9	8.3
인천	3,866.7	3.3	9.0
광주	7,074.7	3.9	11.4
대전	5,103.2	3.8	10.6
울산	7,902.9	3.4	3.8
세종	2,331.6	5.3	2.8
경기	5,347.1	4.0	4.9
강원	12,335.7	13.6	1.3
충북	8,724.7	7.9	1.7
충남	10,340.4	7.5	1.9
전북	11,652.1	8.4	1.9
전남	9,441.1	10.0	1.6
경북	10,037.7	7.2	1.0
경남	5,919.4	5.7	1.8
제주	12,288.7	19.5	6.8

자료 : 서우석 외(2018). 『2017 지역문화예술교육 현황조사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p. 56

【경기도 문화기반시설별 평균 직원 수 (단위=명)】

구분	전체 시설	기초문화재단	문예회관	문화원	문화의집
지자체 평균	12.8	48.4	11.8	4.1	4.3
경기	25.9	70.9	15.5	5.6	3.0

자료 : 서우석 외(2018). 『2017 지역문화예술교육 현황조사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p.71

【경기도 문화기반시설별 문화예술교육 담당 평균 직원 수 (단위=명)】

구분	전체 시설	기초문화재단	문예회관	문화원	문화의집
지자체 평균	3.2	4.1	3.2	2.9	3.4
경기	3.7	6.4	1.5	3.1	2.7

자료 : 서우석 외(2018). 『2017 지역문화예술교육 현황조사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p.72

2) 학교 문화예술교육

■ 경기도교육청 문화예술교육

○ 학교예술교육지원사업

- 학생오케스트라 학교 운영 지원(교육부 지정 52개교, 도교육청 지정 19개교)
- 학생뮤지컬 운영학교 지원(교육부 지정 26개교)
- 학생연극 운영교 지원(교육부 지정 44개교)
- 미술동아리 운영교 지원(교육부 지정 7개교)

○ 예술중점학교 운영

- 일반 중학교 내 예술중점과정(학급)을 개설, 예술에 적성과 소질이 있는 학생들에게 예술 특성화 교육 실시.(교육부 지정 12개교 15학급)

○ 지역 연계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 지역 예술교육 유관 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예술거점·예술드림학교 운영

- 예술거점학교: 관내 학교 공동 프로그램 개설, 연계 교육과정 운영 등 지역 학교예술 교육 거점 역할 수행(초·중·고 4개교)
- 예술드림학교: 소외된 지역 학생에 대한 예술교육 기회 확대(초·중·고 4개교)

○ 교원의 예술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구 지원

- 예술교과 수업 및 교육방법 개선을 위한 교사연구회 활성화 지원(도교육청 지정 예술 교육연구회 10팀 지원)

【2018 경기도교육청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산출 내역	예산
① 학생 예술 동아리	오케스트라 ▶자생 운영교('11~'14지정) : 52교@5백만원(교육부 특교 및 본예산 대응) ▶자생 운영교('18 지정) : 19@5백만원(본예산)	615
	뮤지컬 ▶자생 운영교('13~'14지정) : 26교@4백만원	104
	연극 ▶자생 운영교('14지정) : 44교@4백만원 ※ 기존 학교연극회 150교, 학생연극동아리 150교를 '학생연극'으로 통합 운영	176
	미술 ▶신규 운영교 : 7교@5백만원	35
② 예술중점학교	▶예술중점학교 확대 : 390백만원 - 기존 예술중점학교(1교) : 3학급@15백만원 - 신규 예술중점학교(본예산 6교) : 7학급@15백만원 - 신규 예술중점학교(특교11교) : 12학급@20백만원	390
③ 학교예술교육지원	▶컨설팅 및 성과분석 : 30백만원 ▶교육청별 학교예술교육페스티벌 : 30백만원	60
④ 예술교육드림거점학교	▶기존 예술교육드림거점학교 : 7교@20백만원 ※ 기존 예술드림학교 3교, 예술교육거점학교 4교를 '예술교육드림거점학교'로 통합 운영	140
⑤ 악기뱅크	▶악기지원·관리 : 35백만원	35
⑥ 지역연계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지역예술교육협의체 구축·운영 : 200백만원 - 교육지원청 : 25개청@8백만원	200
합계		707

자료 : 경기도교육청 문예교육과(2018), 『2018년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추진계획』, p.21.

■ 경기도 학교문화예술교육 현황(시설, 공간 등)

- 예술교과 수업이 이루어지는 음악·미술실 확보율은 78.1%로 높으나, 소극장, 연극실 등 다양한 예술 영역을 체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예술공간은 부족함
- 경기도 교육청은 현관, 복도, 유희교실 등 학교 내 유희공간을 활용하여 전시, 공연 등 일상적 예술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예술공감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내 학교의 60%(1,484개교)가 참여 중임

【도내 각급 학교별 문화예술교육 시설 현황 (단위=개, %)】

구분	응답학교수	음악/미술실	무용실	소극장	강당	국악실	연극실	시청각실
초	911	48.4	12.7	4.4	56.3	9.0	1.1	35.6
중	417	92.8	22.8	4.1	68.6	5.3	2.9	54.5
고	293	93.2	16.7	13.3	90.1	5.5	4.8	67.6
계	1,621	78.13	17.40	7.27	71.67	6.60	2.93	52.57

자료 : 경기도교육청 문예교육과(2018). 『예술공감터 운영 협조(2018)』, p.2.

3)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인적자원

■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단체 현황

- 경기도 지역에서 활동 중인 문화예술교육 단체는 총 293개로, 분야별로 보면 만화 1, 건축 2, 사진 7, 영화, 7, 무용 9, 국악 14, 문학 23, 음악 37, 미술(공예) 64, 연극(뮤지컬) 69, 기타 60으로 연극(뮤지컬)의 비중이 가장 높음
- 2015~2017년 지역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단체의 유형을 살펴보면, 민간운영단체가 61.9%를 차지해 민간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남

【문화예술교육 운영 단체 유형별 분류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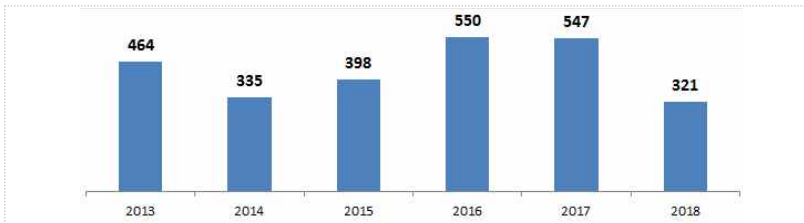
사례 수	민간 운영 단체	연구소/연구회	협회	협동조합	박물관	미술관	문화재단	문화원	문화의집	공공도서관	기타
197	61.9	6.1	1.5	3.0	4.1	2.5	4.6	2.0	1.5	2.0	4.1

자료 : 서우석 외(2018). 『2017 지역문화예술교육 현황조사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p. 72

■ 경기도 문화예술교육사 교부 현황

- 2018년 1차 기준 경기도 지역 문화예술교육사는 총 2,615명으로 전국(14,820명) 대비 17.6%를 차지하여 서울시(28.5%)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경기도 문화예술교육사 교부 현황(2013~2018.1차, 단위:명)】



자료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교부 현황(2018.1차 기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자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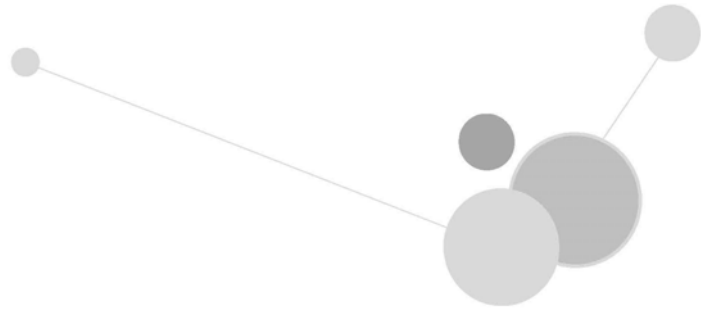
3. 시사점

■ 경기도 사회학교 문화예술교육 연계협력

- ‘경기문화재단과 경기도교육청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양해각서’
 - 경기문화재단과 경기도교육청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2013년 양해각서를 체결함
 - 두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을 교육·체험활동에 활용하는 데에 목적을 둬
 - 문화예술교육·체험프로그램 연계,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문화예술교육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해 명시하고 있음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의 경우에도 잘 드러나듯 사회문화예술교육과 학교문화예술교육의 대상과 영역이 뚜렷한 경계로 구별될 수 없고 상호 교차되는 부분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연계협력의 확장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지역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프로그램 다각화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충
 -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의 경우 예산의 대부분이 ‘학생예술동아리’ 지원에 집중되어 있고, 이 중 ‘오케스트라’에 과도한 비중이 드러나고 있음
 -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경우에도 연극(뮤지컬), 미술 외 다른 분야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인적 자원이 부족함
 - 2018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의 지역연계 프로그램 중 성남시의 ‘어린이 유투버! 나야 나!’, 고양시의 ‘Show me the 힙합!’, 동두천시의 ‘우리 모두 스텝업!’ 등은 기존의 관성적 문화예술교육의 틀을 벗어난 창의적 시도 사례로 주목할 만함
 - 인터넷, 시청각 미디어 등의 최신 환경 및 문화적 트렌드를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흥미를 유발함으로써 능동적 문화예술교육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교육인력의 양성과 안정적 보급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제4장 경기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

1. 문화예술교육 현안 및 대안
2. 경기 문화예술교육 비전, 목표, 추진전략
3. 경기 문화예술교육 추진전략별 세부과제

제 4 장

경기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

1. 문화예술교육 현안 및 대안

1) 간담회를 통한 현안 및 대안 모색

(1) 간담회 개최 개요

구분	일시	주요 논의 내용
1차	2018.07.10	
2차	2018.07.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교육의 의미와 정체성 문화예술교육 지원 시스템
3차	2018.07.18	
4차	2018.08.27	
5차	2018.09.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교육사 운영
6차	2018.09.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문화예술교육 '공간' 문제 취약시기, 생애전환기 문화예술활동
7차	2018.09.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중심 문화예술교육 운영

(2) 문화예술교육 현안

■ '예술'보다 '교육'에 방점을 둔 현 문화예술교육

○ 예술' 고유의 의미가 배제된 문화예술교육

- 문화예술교육은 '성과'보다는 '예술에 대한 참여', '예술로 함께하는 활동'에 본질적 의미가 있음
- 문화예술교육이라는 단어에서 교육자와 교육대상이라는 시각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현 시스템에서 성과는 '교육 회수'로서 교육 다음으로 나가기 어려움
- 학교문화예술교육과 달리 사회문화예술교육은 '교육'이라는 단어보다는 다른 의미와 시선에서 접근되어야 함
- 현재의 문화예술교육은 예술도 아닌 교육도 아닌 애매한 경계에서 복지 차원의 행정 목표를 가지고 있음

-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교육 세 가지 개념이 혼재되어 있는데 사실상 구별되는 영역에서 이해되어야 함
- 공공적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목적으로 갖다보니 예술이 가지고 있는 미학적 요소들이 지원 프로그램 내용에서 배제됨
- 문화예술교육은 사람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예술성을 끌어주는 것에서 가치가 있음
- 문화예술교육은 '테크닉'에서 출발하여 예술성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이 필수불가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폄하하거나 배제하는 풍토가 지배적, 이는 각 예술장르가 가진 고유의 특성과 예술을 체험하면서 변화되는 요소들에 대한 긍정성이 희미해져 버리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음

○ 본질이 결여된 문화예술교육

- 지역문화예술교육에 있어서 지역+예술 모두 본질적인 내용이 결여되어 있고, 형식만 남아있음
- 문화예술교육이 정책 따라가기에 급급할 뿐,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어떻게 예술을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미가 결여되어 있음
-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이라는 것 또한 기술이라는 소재만 달라졌을 뿐 예술이 내포하고 있는 철학이 빠져있음
- 문화예술단체나 교육자들이 노하우를 축적할 수 없는 구조. 예술교육 보다는 기획서 작성에 더 많은 고민이 있음
- 평가에 있어서 정량적 잣대가 기준이 되는 것에 문제가 있음. 출석에 대한 기준이 아닌 만족에 대한 기준, 즉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 문화예술교육사를 분류함에 있어서 명칭이나 용어가 통일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생활문화 영역과 사회문화예술교육과의 경계가 모호한 부분도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함

■ 문화예술교육 접근 관점

-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좁은 테두리에서 벗어나 넓게는 삶의 관점에서 다른 영역과 소통 및 융합의 가능성을 모색해야 함
- 기존 제도권 교육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만든 문화예술교육이 취미교육으로 전락되는 현실에서 예술의 위상과 가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에 대한 의미를 갖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음.
- 문화기본법 등 다른 법과의 관계에서 문화예술교육이 보다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함

- 문화예술교육 현장과 사교육 시장에서 발생하는 비용 차이로 인해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는 예술가 및 단체들의 교육 콘텐츠에 대한 적절한 가치를 재 산정할 필요가 있음
-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문화재단이나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재검토 필요

■ 문화예술교육 수요자에 대한 고민 필요

- 세대 특성에 대한 고민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에 있어서 여러 해외사례들을 참고하여 점진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음. 현행 입시 제도와 맞물린 취업 세대들에 대한 지원을 찾아보기 어려움
 - 생애주기 문화예술교육에 있어서 아이들·청소년·노년층은 있어도 청·장년층에 대한 고민은 찾아보기 어려움
 - 단순히 생애주기로 접근하기 보다는 가족단위로 접근하는 방법을 고민해볼 수 있음
- 정체시기, 생애전환기 대상 문화예술 활동 필요
 - 중·고교 시험(중간 및 기말) 후 2주 정도의 기간, 방학 기간(1월 초 졸업식과 동시에 2월 말 까지 방학), 수능시험 후의 기간은 학교 내 교과과정에서 일종의 정체시기로 학생들에게 집중적인 문화예술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좋은 효과 기대 가능함
 - 생애전환기 학생(초6, 중3, 고3)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

■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시스템 문제

- 유관기관 간 중복사업 문제
 - 지역 내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원, 문화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각 기관별로 다른 특징을 지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문화예술교육에 있어서 중복사업 문제는 부처 간의 사업공유 부재 및 예산집행의 제도적 문제에 따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는 실제 참여자와 현장에서 활동하는 교육자들이 받고 있음
 -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을 어떻게 시스템화 할 것인가 논의 필요
- 단기 프로그램 공모 방식의 한계
 - 예술 활동은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1년 단

- 위 사업형식의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문화예술지원 사업의 지속성이 없으며, 참여자들의 삶 속으로 예술이 스며들지 못하는 한계 발생
- 일회성으로 전락하는 일종의 맛보기 프로그램 지원은 그 목적과 대상에 따라 선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람에 대한 지원보다는 성과중심 지원의 한계로 귀착되고 있으며 새롭게 시도되는 국내 예술가들의 발자취를 긴 안목에서 기록하기보다는 눈에 띄는 과거의 성과, 즉 보여주기 형식의 지원 방식이 변하지 않고 있음
- 지원 형식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관할하는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발생하는 문제로서, 예산집행과 성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
- 또한, 문화예술교육에 여러 주체들이 반복적으로 중복하여 참여하다보니 변별력을 찾기 어려움. 가령, 지역특성화 사업에서도 지역의 특색보다는 동일한 형식의 포맷이 공간만 옮긴 사례로 나타나기도 함
- 자율성이 결여된 예산 편성의 문제
 - 지원예산에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지나치게 적게 책정되어 있음. 단순히 봉사정신이나 사명감만으로 예술가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지원체계 시스템이 아닌 민간문화센터와 같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
 - 기본적으로 예산항목 구성 자체에 문제가 내제되어 있음
 - 예술가 입장에서는 갈수록 행정에 맞춰야 하는 기준(e-나라도움 등)이 늘어나다 보니, 예산운영에 있어서 고비용·저효율 상황 발생
- 지원사업 평가방식의 문제
 - 지원 사업을 평가함에 있어서 심사위원들의 주관적 편향의 최소화 및 예술가가 생각하는 참여자와 나누고자 하는 예술의 본질이 평가받을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평가 및 성과의 가장 용이한 기준으로 활용되는 '참여 인원수' 등의 지표가 오히려 좋은 내용의 프로그램이 성장하는 데 저해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음
 - 문화예술교육의 의미는 시간에 따른 참여자 개개인의 변화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공유에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접근과 공유가 평가 기준이 되어야 함
 - 평가 후에 제시되는 컨설팅과 대안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계속해서 동일한 혹은 유사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지원사업 내용 및 추진 문제
 - 현행 교육환경과 무관하게 프로그램 성격이나 진행을 강요하고 있음. 현장에서 느끼는 여건과 지원 사업 프레임이 일치하지 않음
 - 지역적 소재와 특성을 갖지 않으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음. 단순히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단체를 지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음

- 현재 문화예술교육 지원 내용에 따르면, 다른 협력단체 및 기관과의 관계 관리까지 예술단체나 강사에게 전적으로 역할과 책임을 전가하고 있음으로 인해, 예술가 본연의 업무보다는 행정 관리 업무 과중으로 문화예술교육 질 저하 야기 시킴

○ 문화예술교육 양극화와 공공자본의 사유화 문제

- 지역 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혹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반의 격차가 큼
- 예술단체들이 모집인원에 대한 규정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질 향상 보다는 다른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경우 발생
- 이는 공공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공공자본이 몇몇 외부 요인에 의한 사유화로 프로그램의 질 하향평준화라는 부정적 영향 초래 가능성 큼

■ 문화예술교육사

○ 변별력·실효성 측면에서 미흡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 기존 활동에 대한 폭넓은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취득 가능하게 하여 변별력을 상실하고 있음
- 문화예술교육 강사에 대한 현행 급수별 차등지급의 문제는 누가 몇 등급으로서 적합한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데 있음. 현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제도에서 1급은 기획자에 한정되어 있음. 자격제도 자체에 대한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지도 의문임
- 문화예술교육사 제도를 통해 배출된 강사들의 역량과 질적 수준이 담보되지 못함. 문화예술교육사 과정은 성적에 상관없이 자격증이 배부될 뿐더러 몇 시간 이수했다고 해서 그들의 역량이 전공자들과 같은 수준에 미칠 수 있는지 의문
- 문화예술교육사 운영에 대한 장기적 대안이 없이 성과 만들기에 급급한 정책 운영이 현재의 위기 상황을 불러오고 있음

○ 장기적 비전과 전망이 상실된 문화예술교육사 운영에 관한 문제

- 장기적인 비전과 전망이 상실된 상태에서 문화예술강사에게 제시될 수 있는 롤모델과 비전이 없음
- 현재 학교현장에서는 학생인구 감소에 대한 위기감과 함께 계속되는 예술 강사 유입에 대한 위기감이 공존하고 있음(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학교가 생각하는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과 문화예술강사가 생각하는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의 온도 차이가 있음
- 문화예술강사들이 느끼는 직업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큰 문제로 자리하고 있음
- 예술 강사들의 역량을 강화 한다고 하지만 정작 강사 처우에 관한 실질적인 개선점은

찾아볼 수 없음

- 예술 강사들이 만들어 놓은 창의적 교육 방법들에 대한 저작권이나 다른 형태의 보상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위상

○ 도 내 모든 문화예술교육 총괄이 어려운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정규직인 센터장 외 직원은 프로젝트 기반 계약직(6명 내외)
- 경기문화예술교육센터의 한 해 예산은 약 22억 정도이며 지역특성화 사업은 3억 5천 정도로 매년 유사

■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기반

○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운영 필요

- A시의 좋은 프로그램을 B시가 적용하기 위해 A시에 강사를 요청하였으나, A시와 B시의 이동거리 문제로 성사되지 않은 사례 발생
- 31개 시군의 각기 다른 특성과 현장의 차이로 인한 특수성을 고려한 주요 사업 내용, 조직구성, 인력 개발방법 등 모색 필요
- 지역 내 학교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예술축제 공연 등을 위한 공간이 없음. 지자체 별로 아트홀 문예회관 등 사용하나 대부분 대관료 지불해야 하는 실정(25개 교육지원청 예술축제 개최 '어울림한마당' 예산은 7백만원 x 25개 / 지자체별로 상이한 구성, 시군과 공동개최하는 곳도 있음)

○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인력 부족 및 전문성 축적의 어려움

- 지원기관의 문화예술교육 담당 인력이 매해 순환되기 때문에 사업의 지속성과 일관성이 확보되지 않으며 전문성 축적이 어려움
- 각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음. 기본적으로 예술 강사 처우 개선에 대한 인식이 없는데다가, 책임자가 바뀔 때마다 대화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등 의사소통이 거의 없음
- 지원기관 인력들의 기획 역량과 마인드가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력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함
- 기능 위주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아닌 창의력이 반영된 프로그램 기획 필요하나 기획력을 가진 인력이 많지 않으며 기초 지자체의 경우 문화예술교육 전담 인력이 없는 경우가 있음
- 창의적 교육보다는 주입식 교육으로 역량있는 TA(teaching artist)를 찾기 어려움.

강사의 역량을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음

○ 문화예술 관계자 간 미흡한 연계협력 체계와 대립

- 기존 예술 강사와 신입 강사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예술가와 문화예술매개자, 예술강사와 학교 교사 사이의 소통 강화 필요
- 기존 학교 현장에는 현직 교사들이 문화예술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예술강사의 역할과 의의가 모호하여 상호 신뢰에 대한 부정적 영향 초래하는 경우 발생
-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예술교육에서도 학예사와 기존 전문가들과의 역할 구분이 불명확하여 혼란 초래

○ 체계화되지 않은 아카이빙

- 장기적으로 집계·조사된 자료를 찾기 어려움
- 프로그램 중심 지원보다 예술가나 예술단체 중심 지원은 정보의 축적과 공유 가능성을 높임
- 행정과 현장에서 느끼는 아카이빙 필요성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
- 과거의 자료들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거나 유실되어 있는 상황에서 체계화된 아카이빙 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있음

(3) 문화예술교육 현안에 대한 대안 모색

■ 문화예술교육 접근 관점

- 예술단체는 관련 지식과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기관은 건강한 지역예술단체를 육성·발굴·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 예술단체가 쌓아올린 실적이 단순히 개인적인 영역이 아니라 사회에 확산될 수 있는지에 대해 제고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문화예술교육은 참여 그 자체에 의의를 두어야함. 수혜자에게 예술활동이란 예술을 통해 삶이 즐겁고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함. 여기에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그 다음단계를 계속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본질을 흐릴 수 있음
- 수혜자가 살고 있는 지역문화 정체성이 문화예술교육의 출발점이 되어야 함

■ 문화예술교육 수요자에 대한 고민 필요

○ 다양한 수요자를 고려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개발

- 문화예술교육을 활용한 치유는 모든 세대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음
- 복지적 차원에서 그리고 보편적 차원에서의 균형적 문화예술교육이 필요함. 단순히 생애주기에 따라 대상자들을 분류하기 보다는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이 필요함
- 놀이터, 생활체육시설 등 유휴 공간에 콘텐츠를 도입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음. 예술의 틀 깨기를 시도하고, 버스킹 문화를 확대하는 측면에서도 좋은 시도가 될 수 있음
- 나이별 교육뿐 만 아니라 생애주기에 따른 역할(고3 수험생, 군인, 경력단절 여성 등)에 초점을 맞춘 감성교육도 생각해 볼 수 있음

■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시스템 문제

○ 유관기관 간 역할 명확화 및 협력체계 구축

- 관계부처(문체부·교육부) 유관기관(지역재단, 연구기관) 사이의 소통이 필요함
- 재단은 타 기관의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평가하거나 인력을 끌어오는 등의 일이 아닌 타 기관에서하지 않는 빈 곳을 채워주는 역할 필요
- 평생교육과 문화예술교육 관계망 확산이 필요하며, 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평생교육센터들이 서로 공동사업을 제안하고 경쟁관계가 아닌 신뢰관계로서 네트워킹하는 것이 필요함
-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평생학습원 등과의 협력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사업 진행

- 별도의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내 다른 사업과 연계하여 진행 필요
- 문화예술교육의 단기적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지원 사업 추진
 - 예술가와 수혜자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야 함
 - 단기적 사업보다는 보다 장기적으로 문화예술교육 성과가 가시화될 때까지 지원 사업을 지속해 주어야 함
 - 오랜 사업기간에서 나오는 결과들을 성과로 잇기 위해서는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평가체계와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문화예술교육 지원이 단체나 강사가 아닌 수혜자에게 직접 지원함으로써 시장 경쟁체제로서 운영을 모색할 수 있음(ex 통합문화이용권)
- 세분화 된 예산항목보다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예산 지원
 - 프로그램 특성에 맞는 새로운 항목이 항상 존재하는데 기존 틀에서는 담아낼 수가 없음
 - 또한 경상운영비 중에서 간식비 같은 항목은 없어도 됨. 사탕 등의 간식비 활용을 통한 참여자 모집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음
 - 교육대상자 인원에 따른 예산 지원 효과가 불가피하다면, 예산 폭의 조정 같은 부분은 고려될 수 있음
- 예술가와 참여자의 역할 정립 필요
 - 예술가가 예산안을 기획하고, 검토를 받고, 프로그램 운영 증거자료를 제시하는 현 지원 시스템이 바뀌어야 예술가가 예술성을 담보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낼 수 있음
 - 수요자 부모가 아이의 변화 기록을 맡는 등의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예술교육 성과에 대한 부분은 물론, 공통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음
- 객관적이고 투명한 지원사업 대상 선정
 - 지원 대상 선정과 탈락 사유를 가능한 객관적으로 공개적으로 밝혀주어야 함
 - 근본적으로 심사위원 선정방식도 변경되어야 함. 지원 예술단체나 예술가들을 심사위원으로 도입하는 방법이 제시될 수 있는데, 10%~20% 정도의 평가비중을 담을 수 있음
 - 프로그램 지원에서 있어서 1차-2차 선발과정에서 의견을 취합하고 계속해서 피드백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음
 - 서로 프로그램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고 하는 오픈된 과정이 필요함

- 다양한 시각에서 적용되는 지원사업 평가기준 필요
 - 하향식 사업을 통해 빠른 성과를 얻어내는 것에는 성공하였으나, 이제는 단순히 사업 확산이 아니라 문화예술교육의 의미를 중단·횡단 양측에서 고민해야 함
 - 정량적 평가가 보다 정성적 평가 측면에서 아이들의 경우 수습참여를 통해 변화하는 과정을 시시각각 관찰일지로 기록해 볼 수 있음
 - 수혜자 개인이 가진 경험과 상상을 이끌어주는 과정 그 자체가 주목될 필요가 있음. 교육 목적이 아니라 예술이 주는 감동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함
 - 참여모집 인원 수 할당을 두지 않아야 함. 적은 인원이라도 참여자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를 겪는지가 더 중요함
 - 수혜자들이 프로그램 운영에서 보이는 관계변화, 충성도를 검증해볼 수 있음
 - 문화예술교육이 단순히 어떤 효과가 있었다를 나열하는게 아니라 전체적인 관점에서 조망하고 연구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함
 - 문화예술수혜자들의 변화를 추적해서 질적 효과를 연구화 할 필요가 있음
- 킬러콘텐츠에 대하여 저작권 보호와 같은 보상 방법 필요
 -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에 대한 저작권 등록 필요
 - 다만 어디까지를 저작권으로 범위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모호함이 있음

■ 문화예술교육사

- 문화예술강사 중장기적인 비전과 실질적 대책이 제시
 - 문화예술강사들이 이 분야에 대한 향후 발전방향과 미래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중장기적 비전, 실질적 대안 제시 필요
 - 싱가포르에서도 예술 강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국가적 차원에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과 강사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음. 현장 수요에 따라 데이터베이스화 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기존 강사와 신규 강사와의 파트너쉽도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 현행 학교 교사들과 문화예술강사들이 서로 문화예술교육에 대해 고민해보는 교육 프로그램들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각 지역에 있는 체육센터에도 문화예술교육을 도입하는 방법도 고려되어야 함과 동시에 스포츠 강사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 문화예술교육사 사이에서도 서로의 경험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필요함

■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위상

○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독립

- 중간지원조직(문화예술지원센터)에 대한 예산 및 사업운영 권한 위임이 필요함
- 연단위로 짜인 국가정책 예산운영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면 민간재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음

■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기반

○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운영 필요

- 각 지자체별로 자기 권역 내에서 적용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지원 정책 필요
- 지역 특성을 상세하게 알고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이 주체가 되어서 프로그램 운영 필요
- 예술가뿐 만 아니라 지역의 전문기획자들도 프로그램 운영의 주체가 되어야 함
- 지역 기반 프로그램이더라도 지역 안에서만 갇히는 것이 아니라 외부 지역과 시너지를 함께 발휘할 수 있는 틀에서 운영되면 좋을 것 같음
- 현장 중심 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기초별 현황과 특성에 대한 분석 선행 필요
- 누가, 어디서, 어떻게 문화예술교육을 필요로 하는지 지역 문화자원과 그 필요 수요에 관한 조사가 필요함
- 문화예술교육을 여러 유형으로 분류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수립·시행 필요
- 기초의 경우 문화예술교육 전담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 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경기도 내 문화예술 관계 기관 간 네트워크 및 실질적인 협의회 구성 필요

- 지역의 이해가 뒷받침 되면 관련 사업이나 정책이 나왔을 때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방향성이 생김
- 지역 간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았을 시 특성에 맞는 지원도 가능할 것
- 기관의 장과 실질적인 실무자들이 참여하여 의사결정 추진(경기도 내 6개 미디어센터의 경우 실무자 간 회의 운영)

○ 지역 내 문화예술 공간 발굴·조성 필요

- 학교문화예술교육은 학교 내 교육이 아님. 학생은 지역주민이기도 하므로 지역사회와 교류의 장이 될 수 있음
- 학교 내 유휴공간 발굴을 통한 문화예술공간 조성 확대 필요(용인 예술창작소(성지초등학교)는 지역주민과 함께 지속성을 담보, '19년 상반기 개소를 목표로 빈 교실을 활

용하여 창작을 위한 상상 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음)

- 미래 지역사회 주역이 될 학생들에게 지역이 함께 함을 경험하는 계기,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 대한 선호감 증대, 지역 공동체 소통확대 건전한 공동체성 확보 등 장점이 있으므로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공간 필요시 경기도 대관료 지원 방안 검토
- 상상캠퍼스 경기창작센터 등과 연계성, 경기도와 협력사업 필요

○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전문성 제고

- 교과과정뿐 만 아니라 인적자원 양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되어야 함. 문화예술매개자의 역할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음
- 문화예술교육에서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는 것은 예술가와 수혜자를 연결하는 문화매개자를 어떻게 육성하고 활용하느냐에 달려있음
- 문화예술교육의 목표설정에서 있어서 효과와 가치, 지속가능성에 대한 모델링 필요
- 문화예술교육의 가치를 확산시키는데 있어서 문화예술매개자 육성이 중요. 이것은 연구 및 기획관점에서도 해당됨
- 경기도 내 문화예술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토대로 인력양성 필요
- 경기도 차원의 교육 필증 등을 통한 인력관리 필요
- 재단이나 연구원 또는 교육청이 하나의 네트워크 속에서 예술 강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음

○ 문화예술 관계자 간 협업을 위한 소통 구조 마련

- 각 이해관계자들이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올바르게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 필요함
- 학교문화예술교육의 경우 학교와의 지속적인 연계를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문화예술교육 인력과 단체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함
- 이미 현장에는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들이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서로 발굴하고 공유하며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

○ 예술가 또는 예술단체들이 스스로의 발자취를 정리할 수 있는 아카이빙 지원

- 예술가와 지원기관은 아카이빙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 파트너로서의 신뢰감 형성 가능
- 기관에서는 역량 있는 단체들을 선별하고 키워낼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활용 가능
- 경기도 문화자원에 대한 맵핑 작업부터 시작해볼 수 있음
- 예술 강사들의 경력 경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문화예술교육사들이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그들 역할의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음
- 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 강사들을 사회문화예술교육에서 대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ex. 만35세 이상의 예술 강사들의 활용)

- 협동조합의 형태에서 예술 강사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과의 연계성을 모색해 볼 수 있음.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강사들을 지원 관리할 수 있는 중간시스템이 필요함

■ 문화예술교육 정책 및 사업 수립·시행 방식

○ 기본계획 수립 방향

-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에 있어서 핵심은 중앙정부기관의 중간지원조직 역할로서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기관들이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자율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어떻게 지역 문화예술생태계를 풍요롭게 만들 것인가 하는 점에 밑바탕이 되어야 함
- 지원사업의 실제 기초계획은 기초단위에서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방향 수립 정도로 분권의 의미를 더할 필요가 있음
- 단순히 정책적 분권의 범위를 떠나서 수혜자 개인과 예술단체의 특성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고정된 미션보다는 자유로운 실험이 병행되어야 함
- 상향식 방식은 현재 실험해볼 필요가 있는데, 모든 지원 사업이 예산과 관련한 만큼 불신보다는 신뢰에 기초한 지원시스템 구성이 중요함
- 이 부분은 단순히 예산문제만이 아닌 실제로 서로 필요한 순간에 공동의 목표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함

■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

○ 문화예술교육의 가치 확산을 위한 논의의 장 마련

- 현재 문화예술교육의 가치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향후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 경기도 차원에서 논의 필요
- 지속적으로 지역에서 교육을 넘어선 문화예술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 마련 필요

○ 문화예술교육 관련 홍보 활성화 방안 마련

-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캠페인 홍보도 필요함. 특히, 1인 미디어 콘텐츠를 활용 한다면 간접적 문화예술교육에 활용될 수 있음
- 문화예술교육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 자체를 의미 있게 만들어서 홍보를 확대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음

2) 워크숍을 통한 현안 및 대안 모색

(1) 워크숍 개최 개요

■ 개최 내용

- 일정: 10/22(월), 10:00~19:00
- 참여자: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13명
- 장소: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 오키드룸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 수립 워크숍]

시간	소요	세부내용
10:00~10:30	30'	도입과 마음열기 • 워크숍 취지 설명 • 참여자간 아이스브레이킹
10:30~11:00	30'	간담회 내용 공유하기 • 전체 취합 내용 발제 • 참여자 질의응답 • 논의 사항 결정
11:00~13:00	30'	과제 선정과 공통 주제 논의하기 • 개인별 관심 과제 투표 • 핵심 과제 4개 선정 • 공통 주제 논의
14:00~17:00	210'	핵심 세부 과제 3개 논의하기 • 모듈별 1개 과제 논의 • 서로에게 공유 및 내용 추가 • 최종 보완 및 발표
17:30~19:00	90'	2022 비전 도출하기 • 내가 꿈꾸는 미래 모습 그리기 • 공통점을 기반으로 비전문 도출

■ 워크숍 주요 내용

- 간담회에서 도출된 세부 과정 중 핵심 사안을 선정하여 구체화
 - 문화예술교육관련 조례 제·개정
 - 협력자 - 문화예술교육단체(개인)간 연수 체계화
 - 문화예술교육 단체(개인)풀 구축
 -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평가방안 연구지원
- 경기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 비전 도출

(2) 워크숍 주요 결과

■ 조례 재개정 관련 의견 수렴

○ A모듬 의견

분류	현안
조례 내용 구체화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례 내용의 모호함을 구체화시키는 작업 필요 구체적이고 명문화된 내용이 필요하며 합의된 정책적 방향을 추구해야 함 5장 17조, 18조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음 협의회, 센터, 연구원이 하는 역할과 내용을 구체화 명문화를 넘어 집행 및 실행 기구가 필요
조례 제정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례가 있는 것을 모르는 경우도 많음 예술인들이 직접 조례를 살펴며 함께 논의해야 함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 아닌 실행자 및 현장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함
도지사 및 도의원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지사의 권한이 커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부분이 큰 실정 도지사의 역할이 좀 더 명확해져야 함 조례를 제정하는 도원들이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
센터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센터의 업무 전문성이 필요(순환 근무로 인한 전문성 축적의 불가)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위상에 대한 법적 권한 부여하고 처우를 개선해야 함 (센터장 및 센터 직원의 안정성과 자기 전문성 확보를 위한 내용)
예산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 편성의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함 문화예술교육의 특성에 맞는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함
저작권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 저작권이 없으므로 명확한 기준 필요 조례에 저작권 관련 내용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교육을 위해서는 고민되기도 함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교육을 제외한 것은 행정가의 역할로 정립해야 함 학교 교육에 대한 언급이 명확하게 들어가야 함 재단과 예술단체가 동등하게 경쟁하는 구조를 타파해야 함
분류	대안
지역 특성화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수립을 위한 협의체 구성 필요함 10년간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중단연구를 통해 경기도 색깔 찾기 지역 연구 내용을 기반으로 북부·남부의 문화재단 사업 차별화 및 확대 필요 경기도 전체 영역 권역화 필요(최소: 교육청 지구 단위로 구분) 지역에 대한 분석과 네트워크 구축 - 연간, 월간 만남 추진 지역 센터의 시군구 단위의 지원센터, 협의회 내용까지도 담아야 함('도'의 영역을 넘어야 함) 지역 분권과 강화의 측면에서 기초 단위가 좀 더 단단해야 함

분류	대안
역할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센터, 협의회, 연구원의 명확한 역할 구분 제안 1) 센터: 실행 구체화 2) 협의회: 재원 마련 3) 연구원: 정책 수립 협의회의 경우, 순환보직을 최소화하여 전문성을 높여야 함 협의회의 역할 및 기능을 구체화, 민간전문가 구성을 구체화,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의 비율 명시, 정기적인 회의 운영(예: 연 4회) BOTTOM UP 구조 정착을 위해서는 협의회 및 협의체의 역할과 기능 강화해야 함 센터의 경우, 타지역 센터에 대비한 인력 및 급여 수준을 지급해야 함(인구대비 적용 필요) 민간 영역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 필요(교수, 활동가, 현장 실행가의 고른 선정과 참여) 민간 예술교육 전문가 등의 의견권, 현장 전문가의 참여 비율을 1/3으로 제안 (의원, 교육청, 공무원, 민간, 예술교육인 모두 포함)

○ B모듬 의견

분류	현안	대안
문화예술교육법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른 법은 용어 정의로 시작하는데, 문화예술교육법은 용어 정의가 되어있지 않아 혼란이 있음 경기도 조례안에는 표준 조례안의 참고와 더불어 지역적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문화예술교육 조례의 모범이 명확하지 않음 도 조례, 센터의 조례가 제각각으로 지원센터의 운영과 역할이 모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러 법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법을 넘나들 수 있는 조례 필요 문화기본법-문화예술교육지원법-지역문화진흥법 법간 내용을 검토해 저작권 보호 필요 조례의 기반 강화 부분이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 지역문화 진흥법을 통해 경기도 내 지원조례 필요 지원센터 운영 역할을 구체화해 누구의 영역인지 조례에 담는 것 필요 (조례에 너무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었음) 문화예술 기본 선언 필요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 자체 조례로 센터를 잘 운영하고 있는 시도 있음. 경기도 내에서도 지역 간 편차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 단위가 아닌 기초 단위의 교육 센터가 필요
문화 예술 강사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연구 후 프로그램 저작권 분쟁사례가 발생함 조례에는 도민의 문화예술권만 명시되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례에 저작권을 포함한 문화예술강사의 권리 명시 필요

분류	현안	대안
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회가 모니터링, 지역문화예술교육 계획 수립 및 심의 역할을 보다 제대로 수행할 필요 있음 • 협의회 역할이 명시되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었음 • 협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충분히 수행했는가에 대한 아쉬움에는 공감대가 있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문화예술교육 강사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진행자(강사)가 네트워킹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이 필요함. 이러한 장을 통해 동아리 등 단체가 생겨나야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협의회는 최소 1주일 혹은 정기적 문화예술교육, 여성참여비율 고려, 당연직회원 의무화 등을 통해 예술에 대한 폭넓은 시각과 균형 구축 필요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과 조례의 제·개정 위한 기관과 부처 간 협력, 협업 필요 • 문화재단과 지역 내 작은 기관이 같이 하는 일 필요 	

■ 협력관계자 연수 체계화 관련 의견수렴

분류	한계	제안
연수의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수 프로그램의 다양성(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이 있다는 의견도 있음) • 구조화된 연수 프로그램이 틀을 만들어 버려 그 안에 갖히게 됨. 모두가 같은 내용을 배워 진행하니 이미 해본 내용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많음 • 강사, 교원, 행정가 등이 각각 따로 연수받는 칸막이 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수의 형태] • 양성 이후 지속적인 연수 제공 필요(예: 1달에 1번, 1년 단위로 구성된 대상) • 실무자와 개인이 상호작용하고 소통하며 계획 수립할 수 있는 연수주제와 시간 필요 • 일방적 강의가 아닌 서로 듣고, 서로 보여주는 형태의 연수 필요 • 연수의 한계를 넘어, 일상적 소통을 하며 학습할 수 있는 공유의 통로 마련 필요(예: 협의회 안정화) • 참여학교 의무연수(학교담당자+예술강사, 재단+학교장) • 연수는 위에서부터, 리더의 유연한 사고를 돕는 연수 필요 • [소통과 비전공유] • 사업파트너와 연수를 넘어 서로를 맞춰갈 수 있는 시간 필요 (예:

분류	한계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탈출, 성격검사 등) • 교사, 강사, 학교, 센터가 공통된 비전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함 •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각 관계자의 자발적 역할 부여(교사, 전담인력 등)
학교문화예술교육 협업의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매칭시스템에서 학교는 장르만 선택 가능하고 문화예술강사는 거리, 수업 시수 등에 의해 균등분배 되는 시스템 속 학교와 문화예술강사는 무작위로 만나 합을 맞춰야 함. 학교담당자와 문화예술강사의 협업 스타일, 학교에서 원하는 교육과 맞추기 어렵다 보니 상호 이해가 부족하고 협력이 어려움 • 10월 말 교육을 선정하고, 방학 중 담당 교사 연수 후 2월 말 담당교사가 재발령되는 시스템 • 강사 질에 대한 외부의 부정적인 시선이 있음 • 장르별 특성(교급의 차이) 있음 	<p>[교사와의 협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수업인 만큼 시간 떼우기가 아닌 학급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협력자'역할 필요 • 학교교사와 예술강사 간 협력 프로그램 개발 필요 • 학교 교사가 예술 강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 교사들도 문화예술교육 필요 • 교장, 교감, 실무자 계속해서 회의, 문제, 보완 위한 네트워크 • 교사의 의무 연수를 통해 문화예술교육 동기부여에 대한 방법 모색. 완벽한 인지는 아니어도 인식 가능 <p>[매칭시스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예술강사가 상호 선정할 수 있는 매칭시스템 필요 • 학교의 지원을 받을 때 담당 교사와 교장 선생님의 임기 확인 필요 • 학교와 예술강사의 상호 평가 필요 • 강사-학교-센터가 장기적으로 여러 해 동안 함께 진행 필요
예술강사 전문성 확보의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우 부족으로 잘하는 강사는 이탈하고 신입 강사가 많아짐. 이에 따라 강사 퀄리티에 의문이 생김 • 강사들의 경력 개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예술 강사의 질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 확보 필요 • 킬러 콘텐츠와 철학 필요 	<p>[경력 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상시 연수 • 예술강사의 경력과 질에 대한 관리 • 문화예술강사의 경력 개발 트랙, 비전에 대한 연수 필요 • 계획 수립 후,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에 대해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공유할 필요 있음

분류	한계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미있다/재미없다의 평가지표 	
지역 기반 연수 프로그램의 현주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기반 프로그램의 부족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연수 프로그램 도입 필요 진흥원 연수와와의 차별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가 아닌 지역사회로 묶어 상시 연수 시스템 지역 예술가 단체와 협력 관계자의 공동 연수, 공동 기획 연구 개최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과 서로의 주인의식 필요 단위직원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토달 솔루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철학 공유 삶을 공유하는 연수 서로 배우며 관계를 구축하는 연수

■ 지원사업 평가 방안 연구지원 관련 의견수렴

분류	한계	제안
정량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방안 연구지원 프로그램의 질적 깊이와 반비례하는 수혜자 인원 선정 기준이 평가 기준이라면 선정 기준 자체를 연구해야 함 정량적 평가의 문제 	<p>사업 선정 시,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수혜인원을 책정해야 함</p> <p>수혜자의 주관적 평가가 프로그램 효과로 작용해야 함</p> <p>평가의 최소 가이드라인 구축</p> <p>평가 방식의 지표 관리 체계화</p> <p>심사 및 평가의 구체화 필요 (문서기반에서 전환해야 함)</p> <p>정성적 평가의 객관화</p> <p>정성적 평가 결과의 반영</p> <p>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는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함</p>
정성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 방식 및 결과가 지원 유무에만 영향을 미침 지원사업 평가를 설계에 재반영 기획 역량 강화 워크숍으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함. 모니터 제도를 통해 단체장들이 다른 단체 프로그램에 참여해 정보를 축적하고 나눌 수 있게 해야 성장할 수 있음 	<p>[단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체역량 강화를 위한 평가 방식으로 전환 요구됨 장르별, 분야별, 세부항목별 지원 사업비 다를 수밖에 없음 일괄적 평가기준이 개별·사업별 기준으로 달라져야 함 서로 다른 교육 집단간 모니터링 통해 객관적 관찰하여 시너지

분류	한계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출 필요(융복합·통합예술) 형식적인 질문들을 과감하게 제외해야 함(예: 본 사업에 대한 이해가 있는가?) 평가를 수혜자 관점에서 하는 동시에, 프로그램 자체만 평가하는 것이 아닌 단체 역량 및 활동 내용을 다양하게 고려해야 함
		<p>[수혜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삶을 바꾸려하는 것은 어쩌면 폭력 문화예술교육은 공동 창작이자 오감의 관계임 지원사업의 연속성이 전제되어, 장기적인 추적관찰을 통한 효과 도출 질적 효과를 행복지수로 파악 문화예술교육의 효과 추적 조사
		<p>[시스템 및 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e-나라도움의 개선 혹은 폐지 정산보고서의 간소화
		<p>[모니터링·컨설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사위원을 추천할 수 있었으면 함 이 사업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평가 및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동 모니터링, 평가, 컨설팅의 의미가 모두 다르지만 사전 교감 필요 모니터링 및 컨설팅 시, 멘토와 멘티가 잘 일치되어야 함(분야, 경력 등이 모두 고르게 고려되어야 함) 컨설팅 내용을 단체에게 공유 선정했으면 믿고 맡겨야 함 평가 주체의 전문성이 평가 대상의 장르와 동일해야 함 수혜자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멘토링 집단의 중간 점검이 필요
모니터링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e-나라도움 시스템 정산보고서 복잡 평가자의 등장 긴장됨 모니터, 컨설팅, 심사, 연구가 한 방향으로 일치되어야 함 모니터링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짐 	<p>[협력]</p>

분류	한계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세우는 경쟁 구조에서 벗어나서 1차는 서류, 2차는 피칭 및 모두 투표 방식으로 운영 • 선정 단체들이 네트워킹 및 지식 공유하는 정기적 시간 필요 • 단체와 평가자 간의 협력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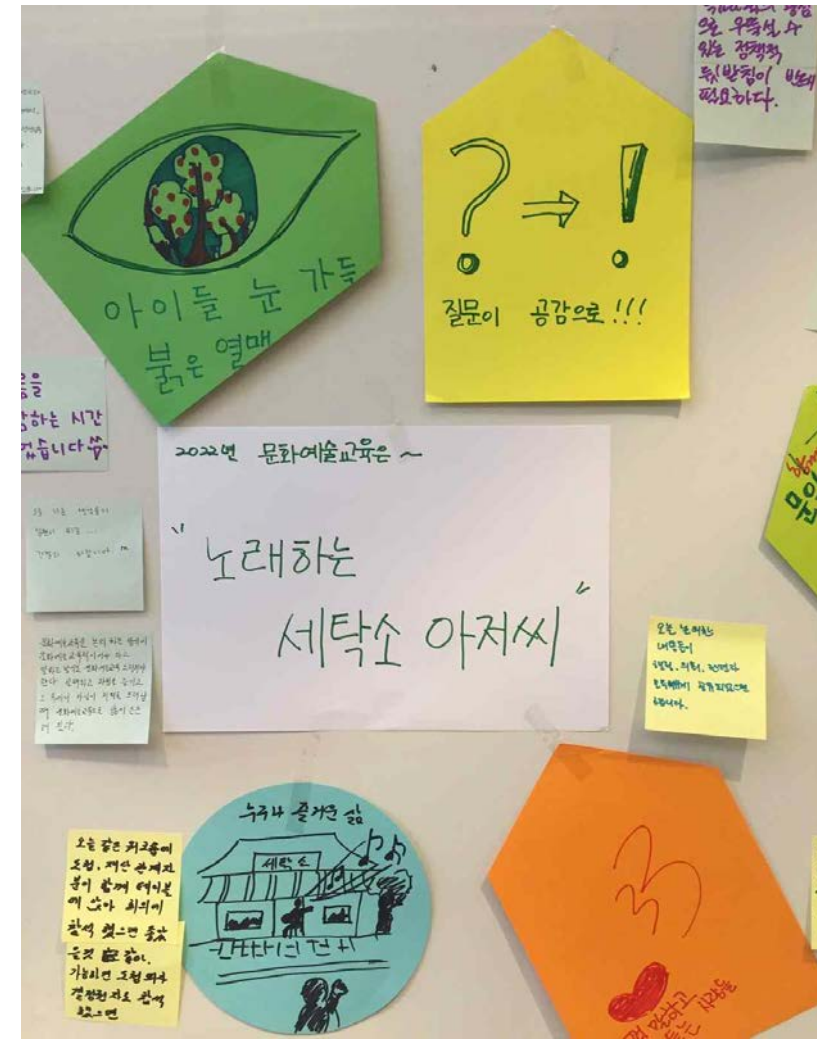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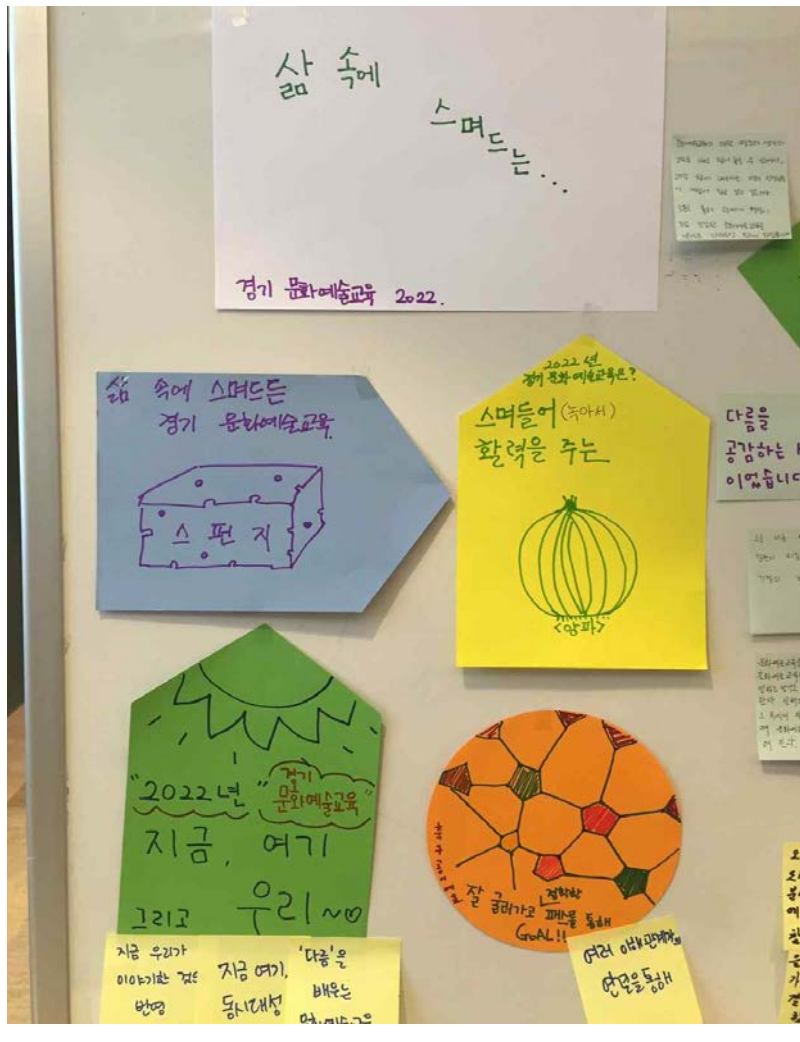
■ 문화예술교육단체(개인)풀 구축

분류	한계	제안
문화 예술가 및 단체 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가 무엇을 했었는지 알기 어려움 • TA, FA 혼재 • 누가(어디가) 적합한지, 누구랑 일할 수 있는지 알기 어려움으로, 네트워크 기반으로 아는 사람과 함께 일을 진행하게 됨 • 각 기관이나 단체에서 풀을 가지고는 있으니 경기권으로 통합 관리되지 못함 • 풀이 없어 개인 역량 강화나 경력 관리도 미흡함 • 문화예술교육사가 있다 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보장되지 않음 • 문화예술교육사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도 알기 어려움 	<p>[풀 운영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기반 예술단체에 기반한 풀 • 평생학습센터 강사관리체제로 수요자와 공급자를 이어주는 플랫폼 구축 • 기존 참여사업의 참여 인력, 활동 내용 등을 현장 데이터 베이스화 (지역센터에서 작업) • 프로그램 지속성 확보를 위한 제도 필요 • 풀을 관리하는 주체가 중요함 • 풀이 만들어지면 지역 기업과 연계해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매칭 가능 • 도의 협의회, 시의 협의회(협동조합보다 공동으로) 필요 • 코카에서 플랫폼 매칭 시 앱 개발 중 <p>[경력 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 퀄리티와 기준 마련 • 경력 경로 아카이브와 플랫폼 필요 • 누가(강사/단체)가 무엇을 했는지 경력 경로에 대한 관리 필요
처우 개선	<p>[일자리 보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등록 시 다른 일 어려움. 그러나 4대 보험도 지원되지 않음 • 경기도 문화예술교육사의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안정, 인력보충을 통해 지원센터 역량을 강화하면 데이터 축적, 프로그램 심화 및 지속성 제고 가능(기존사업 및 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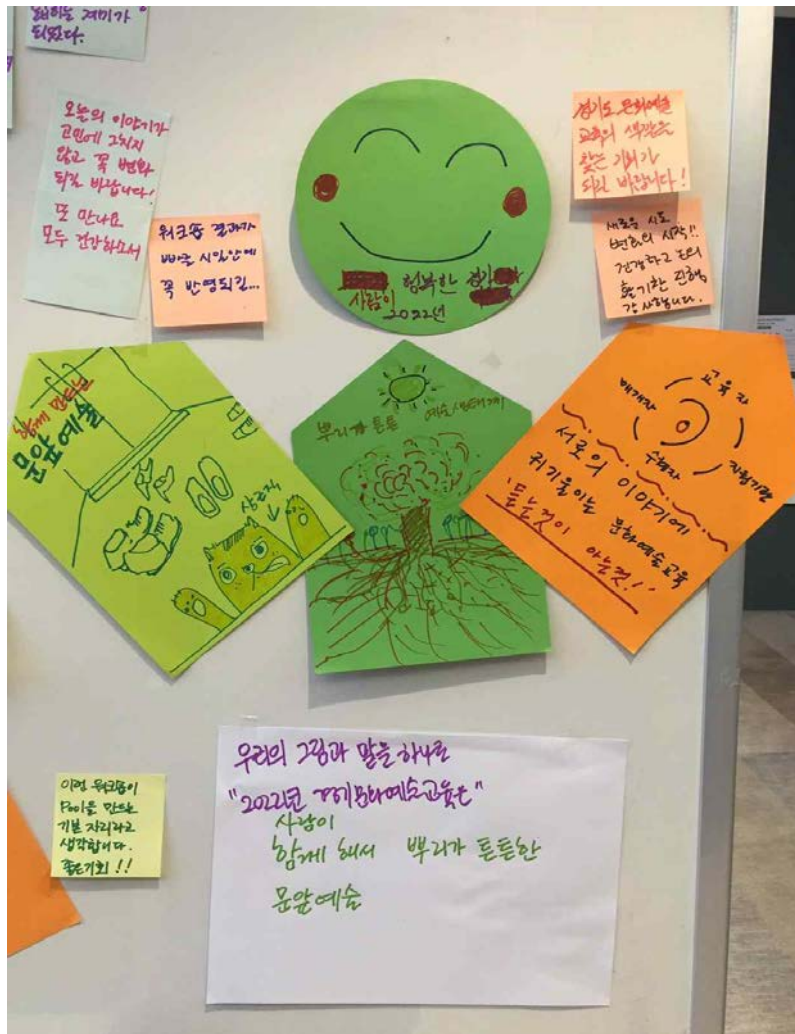
분류	한계	제안
	<p>보장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사업 위주 단체의 생성과 소멸 • 예술 교육이 고용 문제인가? <p>[인력부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이 단체에 불필요한 업무 부담 사업 시행 시 대부분 예산 편성에 코디네이터, 기획, 활동비 등 운영인력 예산이 없음 <p>[현장여건 미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현장 여건이 반영되지 않은 일정(유아기관 누리과정 일정 미반영) • 예술 프로그램 특성상 필요인력과 자격요건 소원 • 예술지원사업에 요구되는 조건이 비현실적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활동 예술가, 프리랜서 강사의 교육과 프로젝트를 매칭, 4대 보험 가입 등을 도와주는 조직 필요 • 교육자로서의 자격은 과정 이수로 줘서는 안 됨.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자체가 사회복지사처럼 개선될 필요 있음 • 적합단체(개인)의 자격 검증하는 등록제, 자격제(협동조합과 같은)

■ 2022 경기문화예술교육 비전도출 결과

- 삶 속에 스며드는 경기 문화예술교육 2022
 - 스며들어 (녹아서) 활력을 주는
 - 지금, 여기 그리고 우리
 - 잘 굴러가고 정확한 패스를 통해 GOAL
- 노래하는 세탁소 아저씨
 - 누구나 즐거운 삶
 - 마음껏 말하고 기쁘게 듣는 사람들
 - 질문이 공감으로
 - 아이들 눈 가득 붉은 열매
- 사람이 함께 해서 뿌리가 튼튼한 문앞 예술
 - 함께 만드는 문앞 예술
 - 뿌리가 튼튼 예술 생태계
 -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문화예술교육 '듣는 것이 아는것!'
 - 사람이 행복한 경기 2022년



사람이 함께해서 뿌리가 튼튼한 문앞 예술 결과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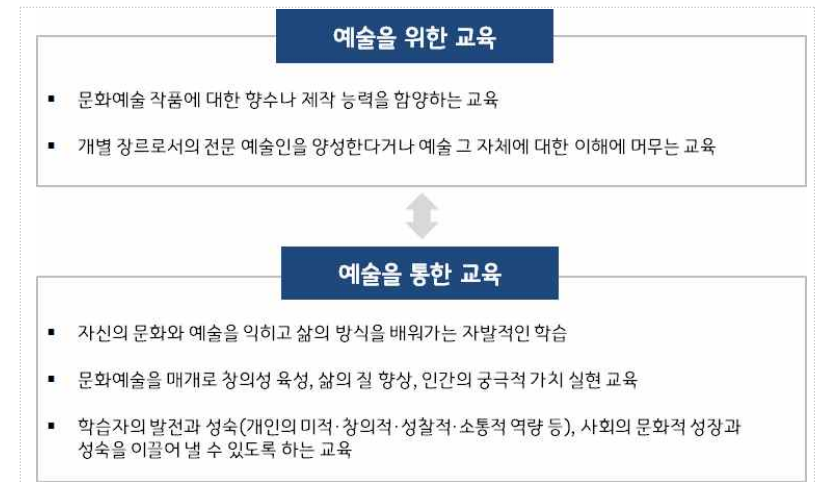
2. 경기 문화예술교육 비전, 목표, 추진전략

1) 경기 문화예술교육 방향과 필요성

■ 경기 문화예술교육 방향

- 문화예술교육은 문화(Culture), 예술(Arts), 그리고 교육(Education)의 합성어로 어디에 방점을 두는가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음
- 협의적 개념으로서의 문화예술교육은 미술, 음악, 연극 등 예술 장르와 관련하여 향수나 제작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 관점에서 주로 이해되며 이는 '예술을 위한 교육'으로 여겨짐
- 광의적 개념으로서의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을 매개로 삶의 방식을 배워가는 것으로 '교육'보다 '문화예술'의 본질, 고유의 의미에 중점을 둔 '예술을 통한 교육'으로 여겨짐
- 경기 문화예술교육은 '예술을 위한 교육'과 '예술을 통한 교육'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함
- 경기 문화예술교육은 경기도 지역 특성을 기반으로 지역 및 계층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기도 친화적인 문화예술교육을 지향

[경기 문화예술교육 방향]



■ 경기 문화예술교육 의의와 필요성

- 창의성, 예술적 감수성, 통합적 사고 확대로 개인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
- 자기 발견, 자아표현 확대, 자존감 제고 등 성찰적 역량 제고가 가능하며 나아가 '나'의 삶의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음
- 타인·타문화에 대한 이해, 소통의 기회 확대로 문화 다양성 증진에 기여함
-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스스로 문화예술의 소비자, 향유자이자 생산자가 되어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지역문화예술의 주체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음
- 궁극적으로 경기 문화예술은 창의성, 예술적 감수성, 통합적 사고, 자기발견, 자아표현, 자존감, 타인·타문화에 대한 이해·소통, 새로운 가치 발견 등을 통해 경기도민을 문화시민으로 육성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

[경기문화예술교육 의의와 필요성]



2) 경기 문화예술교육 비전, 목표, 추진전략

■ 경기 문화예술교육 비전

- 삶 속에 스며드는 뿌리가 튼튼한 경기문화예술교육
 - 삶 속에 스며들어 활력을 주는 문화예술교육 지향
 - 뿌리가 튼튼한 문화예술교육 선순환 생태계 구축 지향

■ 경기 문화예술교육 3대 목표

- 다름이 함께하는 문화 경기도
 -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다양성에 대한 이해 가치가 공유되고 서로 배우며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경기도
- 살아 움직이는 예술 경기도
 - 예술의 가치가 살아있는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예술이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경기도
- '나'와 '너'를 찾는 교육 경기도
 - 예술적 경험 과정을 통해 '나'와 '너'의 존재와 삶의 의미를 찾아나가는 경기도

■ 경기 문화예술교육 5대 추진전략

- 지속가능한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기반 조성
 - 경기도 관점에서 자율적이고 지속적인 계획과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 문화예술교육 관련 연구 활성화 등 기반 조성 추진
- 지역 기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경기도가 보유한 하드웨어(공간) 및 소프트웨어(콘텐츠, 인적자원 등) 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통한 지역 기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도모
- 수요자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제공
 - 지역의 문화 환경(공급과 수요 차원), 사회적 변화 등 종합적 현황 파악을 토대로 한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다차원적인 정책접근과 사업 설계 도모
-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 문화예술교육 수혜자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문화예술교육 관계자(문화예술교육

단체(개인), 관계기관 실무자, 협력관계자(학교 교사 등) 등의 질적 성장과 문화예술 교육 가치 공유를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구축

- 도내 문화예술교육 단체(개인)가 갖는 사회적·경제적 가치 발굴·육성, 우수 프로그램의 공유 및 확산 등 문화예술교육 질적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 추진

[경기문화예술교육 3대 목표 및 5대 추진전략]



3. 경기 문화예술교육 추진전략별 세부과제

추진전략	세부과제
지속가능한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기반 조성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개정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간 협의회 구축·운영 확대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기능 강화 및 기초 단위 확대·운영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종단연구 지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개발 지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평가 방안 연구 지원
지역 기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문화예술교육 공간 지원(유희공간 발굴·조성, 대관료 지원 등)
	문화예술교육 단체(개인)-기획자 연계를 통한 특화 콘텐츠 발굴 지원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단체(개인) 풀(Pool) 구축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관련 프로그램 실태 조사 및 연계
수요자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제공	문화예술교육 수요자 세분화 및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통합문화이용권 연계 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교육 버스킹 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문화예술교육 단체(개인) 멘토링 제도 도입
	기관 실무자 기획역량 제고 프로그램 운영
	협력관계자-문화예술교육 단체(개인) 연수 체계 구축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구축	문화예술교육 협동조합 발굴·육성
	문화예술교육 플랫폼 구축운영
	(가칭)경기 문화예술학교 조성·운영
	문화예술교육 홍보 프로그램 강화

추진전략 1

지속가능한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기반 조성

세부과제 1-1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개정

■ 배경 및 목적

- 경기도 지역 특성에 대한 고려가 반영된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필요
 - 표준 조례안의 참고와 더불어 지역 특성에 대한 고려 필요
- 문화예술교육 관련 조례가 지원기관, 예술단체, 수요자에게 기본 원칙이자 근간으로 작용하기 위하여 내용이 모호한 현행 조례의 구체화 작업 필요
 - 제5장 문화예술교육 기반 강화의 제17조(전문인력 양성), 제18조(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 내용의 구체화 필요
 -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경기도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문화재단, 경기연구원, 문화예술교육 단체(개인)의 역할과 내용 구체화 필요
 - 도민의 기본권과 더불어 문화예술교육 단체(개인) 기본권에 대한 내용 반영 필요
 - 교육 저작권 보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예술 강사의 킬러콘텐츠, 창의적 교육 방법 등과 관련한 저작권 보호 또는 기타 다른 형태의 보상체계 관련 내용 반영 필요
- 조례에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 아닌 경기도 지역적 특성 및 합의를 정책적 방향을 담기 위하여 실행자 및 현장 전문가(문화예술교육 단체(개인), 관계 전문가 등) 의견 수렴을 통한 개정 필요
- 조례를 집행, 실행할 수 있는 실질적 기구 필요
 -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위상에 대한 법적 권한 부여 필요
 - 문화예술교육 특성에 맞는 예산편성의 자율성 확보 필요

■ 사업내용

-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개정 연구 용역 추진
 -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연구원 등의 역할 및 문화예술교육 기반 강화(전문인력 양성, 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 등) 내용 구체화, 저작권 관련 내용 등 반영
 - 조례 개정 연구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추진
-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기본선언 및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개정
 - 예술가로 출발하는 예술강사 및 문화예술교육사들의 재교육 제도화 필요

■ 단계별 추진계획

추진계획	추진일정				
	2018	2019	2020	2021	2022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개정 연구 용역 추진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기본선언 및 조례 개정					

■ 기대효과

- 경기도 특성을 고려한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세부과제 1-2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간 협의회 구축·운영 확대

■ 배경 및 목적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문화예술교육의 다양한 분야와 대상에 따른 전문기관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교육적 효과를 높이고 교육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문화예술교육 유관기관 협의회’ 발족(2018.7.31.)¹⁾
-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관계자가 함께 자율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지역 문화예술교육 생태계를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 필요
 - 문화예술교육 관계기관 간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등 경쟁관계가 아닌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 필요
-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질적 제고 및 확산 기반 마련을 위하여 경기도형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간 협의회 구축·운영 확대 필요
 - 상향식 정책 수립 구조(Bottom-up) 정착을 위하여 협의회 역할 및 기능 강화 필요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른 협의회 역할인 모니터링, 지역문화예술교육 계획 수립 및 심의 역할을 보다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경기도, 교육청, 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평생교육센터, 문화예술교육 단체(개인), 기획자 등 문화예술교육 관계자로 구성된 열린 협의회 구축 필요
 - 지역에 대한 분석과 네트워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례 모임(월간, 연간 등) 운영 필요

■ 사업내용

-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간 협의회 구축·운영 확대 계획 수립
 - 범위, 분야, 수혜 대상 등을 고려한 협의회 구축·운영 세부 계획 수립
 - 운영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등 구체적 역할 구분 운영 필요
 -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의 구성 비율, 여성 참여 비율, 당연직회원 의무화, 정례회의 운영, 민간 영역의 기준 및 역할 명확화, 심의기구로서 역할 등 구체화된 협의회 구축·운영 등 세부 계획 내용을 반영한 조례 개정
- 광역 및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간 협의회 구축·운영
 - 조례 개정을 통한 시·군 단위 협의회 구축·운영 내용 포함
 - 경기도 및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정책 방향 논의, 관계 기관 간 공동사업 추진

1) 문화예술의 분야별 기관으로 구성된 문화예술분과(국악, 미술, 연극, 무용, 영화, 만화, 공예·디자인, 음악, 전통공연예술, 과학기술 등 10개 기관 관계자)와, 생애주기 대상별 기관으로 구성된 시민분과(유아, 아동, 청소년, 여성, 중장년, 노인,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8개 기관 관계자)로 나뉘어 운영

■ 단계별 추진계획

추진계획	추진일정				
	2018	2019	2020	2021	2022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간 협의회 구축 계획 수립					
광역 단위 문화예술교육 협의회 구축·운영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협의회 구축·운영					

■ 기대효과

- 경기도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교육 정책 수립 기반 마련
- 경기도 내 유관기관 간 연계를 통한 문화예술교육 다양화 및 내실화 도모

세부과제 1-3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기능 강화 및 기초 단위 확대·운영

■ 배경 및 목적

- 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전문성 및 자율성 확보방안 모색 필요
 -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순환근무로 인해 지속성, 일관성 확보가 어려워 전문성 축적 불가
 -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개별 사업별로 교부·정산되어 기획 및 예산 편성의 자율성이 낮음
- 지역 내 환경과 수요를 반영한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정책지원 체계 구축을 위하여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필요
 - 기초 단위의 경우 문화예술교육 전담 인력이 없는 경우가 있으며, 경기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선정 횟수도 차이가 나타남²⁾
 - 31개 시군이 갖는 특수성을 고려한 조직 구성과 문화예술교육 관련 주요 사업 도출을 위하여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확대·운영 필요
 - 경기도 내 지역 간 편차가 있어 경기도 차원의 지원 필요(경기도 내 2개 시·군(광명시, 성남시)만이 자체 조례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운영)

■ 사업내용

-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독립
 - 치우 개선 추진
 -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한 예산 편성의 자율성 확보
 - 경기도 거점기관으로서 중앙정부와-기초 매개 역할 추진
-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확대·운영
 - 조례 개정을 통해 권역별 및 시·군 단위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조성, 운영 포함
 - 권역별(교육청 지구 단위 권역 등)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확대·운영
 - 시·군단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확대·운영

2)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2018)의 도내 문화예술교육 사각지대 조사 결과, 2014~2018년간 경기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에서 4회 이상 선정되지 못한 시군이 6곳(광명, 동두천, 오산, 용인, 시흥 등)으로 나타남. 광명, 용인, 오산의 경우 기초문화재단 등을 통해 주민자치센터나 자체 프로그램 등을 운영, 문화예술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나 구리, 동두천, 시흥 등은 예술교육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구조로 나타남

■ 단계별 추진계획

추진계획	추진일정				
	2018	2019	2020	2021	2022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위상 강화 추진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확대·운영을 위한 기초 연구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확대·운영					

■ 기대효과

-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보편적 문화복지 도모
-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정책 환경 조성을 통한 문화자치 기반 마련

■ 배경 및 목적

- 문화예술교육 정책 및 사업의 하향식 추진으로 빠른 성과를 얻어내는 것에는 성공하였으나, 문화와 예술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지에 대한 가치와 효과 입증이 어려움
- 1년 단위 공모사업 위주로 지원되어 문화예술교육 효과·성과 관련 연구가 대부분 단기적, 일회성으로 이루어짐
- 시간 경과에 따른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성과에 대한 종합적 연구·분석을 위한 추적조사, 중단연구 등 장기적 연구 진행이 필요

■ 사업내용

- 문화예술교육 중단연구 계획 수립
 - 현재까지 추진된 문화예술교육 성과 종합 분석
 - 사업별 중단연구 계획 수립
-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중단연구 추진
 - 연구의 목적을 '교육성과'가 아닌 예술을 통한 개개인의 '변화'와 '과정'에 방점
 -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연속성을 전제하여 장기적 추적관찰을 통한 효과 도출
 - 질적 효과를 행복지수로 파악
- 시·군 문화예술교육 중단연구 지원

■ 단계별 추진계획

추진계획	추진일정				
	2018	2019	2020	2021	2022
문화예술교육 중단연구 계획 수립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중단연구 추진					
시·군 문화예술교육 중단연구 지원					

■ 기대효과

- 문화예술교육 가치 및 효과 입증을 통한 지원 근거 마련
-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효과 및 개선 방향 모색으로 문화예술교육 발전에 기여

■ 배경 및 목적

- 정책적 분권의 범위를 떠나 수요자 개인과 문화예술교육 단체(개인)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고정된 미션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실험 병행 또한 필요
-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제19조에서는 “도지사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 교육시설, 단체 등에 프로그램 개발·보급,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
- 경기도에 특화된 자체 문화예술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기회 제공 확대 필요

■ 사업내용

- 지역 특화 자원 발굴 및 콘텐츠화 등을 통한 신규 프로그램 개발·운영
 - 학교 교사와 예술 강사 간 협력 프로그램 개발 지원
 - 도내 문화예술교육 단체(개인)와 문화기획자 간 협력 프로그램 개발 지원
 - 도내 문화예술교육 단체(개인)의 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원
-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 지원
 - 기획·개발된 문화예술교육 신규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

■ 단계별 추진계획

추진계획	추진일정				
	2018	2019	2020	2021	2022
지역 특화 자원 발굴 및 콘텐츠화 등을 통한 신규 프로그램 개발·운영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 지원					

■ 기대효과

- 경기도 지역 문화예술교육 단체(개인)의 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 지역문화 생태계 조성 기반 마련
- 문화예술교육 질적 내실화 도모 교육 내용·방법·형태의 다각화를 위한 지원 체계 및 교육 기반 조성 필요

■ 배경 및 목적

- 문화예술교육 질적 깊이와 수요 인원 수는 비례하지 않음
 - 수요 인원수가 많아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효과가 담보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이는 문화예술교육 수준과 비례하지 않음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특성상 수요 인원 수가 소수로 제한되는 경우 문화예술교육 지원 공모 사업에 지원하지 못하는 사례 발생
-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평가 시 전문가 판단에 따른 적절한 수혜 인원 책정이 필요함에도 현 성과 평가 시스템에서는 수혜 대상자가 많아야 성과가 담보되는 상황
- 예술가 입장에서는 수혜 대상자 수뿐만 아니라 교육 가치, 참여자 개개인의 변화와 같은 성과 역시 의미가 있어 문화예술교육 수요자들의 변화를 추적하여 성과에 반영하기 위한 정성평가 필요
-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에 대하여 전체적인 관점에서 조망하고 지원 사업 분야, 내용 등에 따른 평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필요
- 지원사업 평가 결과가 실제 프로그램 질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설계에 재반영되어 모니터링, 컨설팅, 심사, 연구가 한 방향으로 일치될 수 있는 환류 시스템 필요
 - 단순 사업 평가가 아닌 단체역량 강화를 위한 평가 방식으로 전환이 요구됨

■ 사업내용

-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정성·정량평가 방안 연구
 - 형식적 질문, 문서기반에서 벗어나 사업 분야, 내용 등을 고려한 정성·정량 평가 지표 체계 구축으로 심사 및 평가 방법 및 내용의 객관화·구체화
 - 세부과제 1-4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중단연구'와 연계한 수요자 관점에서의 평가(행복 지수 등)뿐만 아니라 단체 역량 및 활동 내용 등을 다양하게 고려할 수 있는 평가 방법 및 내용 필요
-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정성·정량평가 시범 도입 및 지표 체계화
- 지원사업 평가 후 결과 환류 시스템 구축
 - 평가결과를 지원사업에 반영하여 보완할 수 있는 환류시스템 구축·도입

- 문화예술교육 모니터링·컨설팅 운영
 -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정성·정량평가를 반영한 모니터링·컨설팅 운영
 - 분야, 경력 등이 고르게 고려된 모니터링 및 컨설팅 멘토-멘티 설정
 - 서로 다른 문화예술교육 단체(개인) 간 모니터링을 통한 객관적 관찰 및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속적인 정보 공유 등의 시간 마련
-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평가 가이드라인 구축·운영

■ 단계별 추진계획

추진계획	추진일정				
	2018	2019	2020	2021	2022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정성·정량평가 방안 연구		■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정성·정량평가 시범 도입 및 지표 체계화			■		
평가 후 결과 환류 시스템 구축			■		
문화예술교육 모니터링·컨설팅 운영				■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평가 가이드라인 구축·운영				■	■

■ 기대효과

- 정량·정성 평가를 통한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질적, 양적 내실화 도모

세부과제 2-1

문화예술교육 공간 지원

■ 배경 및 목적

- 지속적·상시적으로 필요할 때 문화예술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문화시설 부족
 - 전국 지자체 평균(5.1개)보다 낮은 경기도 인구 10만명 당 문화시설수(4개)
- 각 시설마다 비슷한 공간 구조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진행에 적합한 공간 부족
 - 높은 음악·미술실 확보율(78.1%)에 비해 복합문화예술공간은 부족한 상황
 - 학생 중심 축제 등 개최 시 지역 내 문화시설 활용에 필요한 대관료 지불 부담
- 놀이터, 체육시설 등 지역 내 활용 가능한 유휴공간 발굴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공간 조성, 지역 내 문화시설 활용 시 대관료 지원 등 지역 기반 공간 활용 방안 모색 필요

■ 사업내용

- 지역 내 유휴공간 발굴·지원 및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공간' 공식 지정 운영
 - 체육시설, 학교·아파트 단지 내 유휴공간 등 지역 내 활용 가능 유휴공간 발굴
 - 문화예술교육 현황 및 수요 조사를 통한 문화예술교육 공간 조성 지원
 - 기존 공간을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공간'으로 공식 지정 운영 (카페 등 다양한 기존 공간 활용 제고)
- 문화예술교육 공간 대관료 지원
 -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공간 대관시 대관료 지원

■ 단계별 추진계획

추진계획	추진일정				
	2018	2019	2020	2021	2022
지역 내 유휴공간 발굴·지원 및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공간 공식 지정 운영					
문화예술교육 공간 대관료 지원					

■ 기대효과

- 도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공간 조성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에 기여

■ 배경 및 목적

- 동일한 포맷의 문화예술교육이 여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등 지역에 특화된 자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부족
- 경기도는 "2018 경기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기획공모"를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교육 구성안 개발·운영 등을 위해 문화예술(교육) 단체 모집³⁾
- 문화예술(교육) 단체뿐만 아니라 지역 특성을 상세하게 알고 있는 기획자 등이 함께 콘텐츠 발굴·육성 추진 시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
- 문화예술교육 단체(개인)과 기획자 연계를 통한 지역 특화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발굴 기회 마련 필요

■ 사업내용

- 문화예술교육 단체(개인)-기획자 연계를 통한 콘텐츠 발굴 공모 지원
 - 지역특화 콘텐츠 발굴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단체(개인)-기획자 연계 기반 마련
 - 문화예술교육 단체(개인)-기획자 연계를 통한 지역 스토리 및 인적·물적 소재 기반 문화 콘텐츠 발굴 지원

■ 단계별 추진계획

추진계획	추진일정				
	2018	2019	2020	2021	2022
문화예술교육 단체(개인)-기획자 연계를 통한 콘텐츠 발굴 공모 지원					

■ 기대효과

- 경기도 특화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발굴로 도민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
- 지역 기반 문화예술교육 단체(개인), 기획자 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협력 기반 조성

3) 2018 경기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서는 구리, 동두천을 대상으로 i)자원 리서치 활동을 통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교육 구성안 개발·운영 지원, ii)주인 네트워크를 통하여 지역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도모 추진

세부과제 2-3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단체(개인) 풀(Pool) 구축

■ 배경 및 목적

- 각 기관이나 단체에서 인력 풀을 보유하고 있으나 경기권으로 통합·관리되지 못하여 교육수행기관 및 단체의 제한된 예술강사 인력풀 활용의 문제, 성공적인 교육 콘텐츠의 공유 및 확산의 어려움, 문화예술교육 주체 간 교류협력 어려움 등 야기⁴⁾
- 경력 경로 등에 대한 체계적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아 문화예술교육 단체(개인)의 질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 확보가 어려움
 - TA(Teaching Artist), FA(Facilitating Artist) 등 관련 용어 혼재
 - 누가, 어디에 적합한지에 대한 정보 미비로 개인 네트워크를 통한 인력 활용
 - 문화예술교육 단체(개인)의 역량 강화 및 경력관리가 미흡한 경우가 있으며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음
- 문화예술교육 단체(개인)가 스스로의 발자취를 정리할 수 있는 아카이빙 과정을 통해 단체(개인)와 관계기관 간 파트너로서 신뢰감 형성 가능
- 문화예술교육 주체 간 활발한 인력 및 교육정보 교류, 문화예술교육사업의 자립성 강화, 문화예술교육 단체(개인) 질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 확보 등을 위한 풀 구축 운영 필요

■ 사업내용

- 현장 데이터베이스화
 - 지역 기반 예술단체에 기반한 풀 구축을 위하여 지역센터에서 기존 참여사업의 참여 인력, 활동 내용 등을 데이터베이스화 추진
- 현장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경력 경로 시스템 구축
 - 경력 경로의 기준 및 관리 방안 마련
 - 경력 경로 시스템 구축
- 경기도 내 문화예술교육 단체(개인) 풀(pool) 운영
 - 경기도 내 문화예술교육 단체(개인)의 경력 경로를 반영한 풀(pool) 구축·운영
- 경기도 내 문화예술교육 단체(개인) 매칭 프로그램 운영
 - 풀(pool)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단체(개인)와 관계기관, 지역기업 등 간 교육 프로그램 매칭 등 문화예술교육 수요자와 공급자 매칭 콘텐츠 확대·운영

4) 임학순 외(2017). 「문화예술교육 인력플랫폼 구축 타당성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p.3.

■ 단계별 추진계획

추진계획	추진일정				
	2018	2019	2020	2021	2022
현장 데이터베이스화		■	■		
현장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경력 경로 시스템 구축			■	■	
경기도 내 문화예술교육단체(개인) 풀(pool) 운영				■	■

■ 기대효과

-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매칭 가능
- 문화예술교육 단체(개인)에 경력개발 의지 제고로 지역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기반 마련

세부과제 2-4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관련 프로그램 실태조사 및 연계

■ 배경 및 목적

- 문화예술교육은 지역 내 문화시설 이외에도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관 등 타 기관에서 다수 실행되고 있음
- 각 기관별로 다른 특징을 지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되고 있으나 기관 간 사업공유 부재 등의 이유로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현황 및 내용에 대한 종합적 자료 미비
- 지역 연구 내용을 기반으로 한 경기북부·남부 사업 차별화 및 확대 필요
-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관련 프로그램 종합적 실태조사 및 기관 간 연계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 문화예술교육자의 효율적 활용체계 조성 및 중복사업 방지 필요

■ 사업내용

-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관련 프로그램 실태 조사
 - 문화기관, 복지시설, 평생교육 등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관의 프로그램 공급 현황, 참여 현황, 욕구 등 실태 조사
- 문화예술교육 관련 시설·프로그램 연계 협력 방안 도출
- 문화예술교육 관련 시설·프로그램 연계 협력 시스템 구축·운영

■ 단계별 추진계획

추진계획	추진일정				
	2018	2019	2020	2021	2022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관련 프로그램 실태 조사					
문화예술교육 관련 시설·프로그램 연계 협력 방안 도출					
문화예술교육 관련 시설·프로그램 연계 협력 시스템 구축·운영					

■ 기대효과

- 경기도 지역 문화예술교육 정책 수립 위한 기초 자료 제공
- 경기도 내 유사·중복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관리를 통한 효율적 문화예술교육 운영 기반 조성

추진전략 3

수요자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제공

세부과제 3-1

문화예술교육 수요자 세분화 및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배경 및 목적

- 문화예술교육 지원 대상자를 단순 생애주기에 따라 구분하기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사회환경적 변화와 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한 세분화 필요
 - 가족 단위, 경력단절 여성, 학생 취약시기(시험 후 2주 내외), 생애전환기 학생(초6, 중3, 고3), 수험생, 취업준비생, 군인, 50대 이상 성인 남성 등
- 지역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운영 기반 및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등 차이가 있어 지역 간 문화예술교육 격차 완화 방안 모색 필요
 - 지역간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 박탈뿐만 아니라 지역민과 지역의 성장 저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지원 지역 세분화 필요
- 문화예술교육 수요자 특성을 반영하여 세분화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현장 요구와 수요에 대한 세밀한 조사 체계 구축 필요

■ 사업내용

-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수요조사
 - 문화예술교육 수요조사 지표체계 구축 및 조사
- 문화예술교육 대상 세분화 및 지원 계획 수립
 - 문화예술교육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대상 세분화 및 지원 계획 수립
- 문화예술교육 대상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단계별 추진계획

추진계획	추진일정				
	2018	2019	2020	2021	2022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수요조사					
문화예술교육 대상 세분화 및 지원 계획 수립					
문화예술교육 대상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기대효과

- 정책수요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문화예술교육 향유 기회 제고

세부과제 3-2 통합문화이용권 연계 프로그램 운영

■ 배경 및 목적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⁵⁾의 생애주기에 따른 지역별 이용액 추이 분석 결과 3년(2014년~2016년)간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⁶⁾
- 경기문화재단 문화나눔센터에서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이용자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기획프로그램 지원⁷⁾
-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소외계층의 문화예술교육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통합문화이용권'과 연계한 프로그램 기획/운영 지원 필요

■ 사업내용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문화예술교육 관련 사용자 확대 방안 모색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연계 프로그램 기획 운영 지원
 - 문화예술교육 전문 단체(개인)과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 기획/운영으로 수요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 서비스 제공

■ 단계별 추진계획

추진계획	추진일정				
	2018	2019	2020	2021	2022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문화예술교육 관련 사용자 확대 방안 모색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연계 프로그램 기획 운영 지원					

■ 기대효과

- 수요자에 문화예술교육 직접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시장 경쟁체제로서 운영 모색 가능

5)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지원하는 카드사업

6) 정무성 외(2017), 「2016 통합문화이용권 성과평가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송실대학교, p.60.

7) '카드기획 프로그램 <슈퍼맨 프로젝트>'는 도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를 위해 구성된 카드 기획 프로그램으로, 수요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함. 경기문화재단과 공모로 선정된 문화예술·여행·체육 관련 전문 단체가 협업을 통해 프로그램 기획/운영 추진

세부과제 3-3 문화예술교육 버스킹 프로그램 운영

■ 배경 및 목적

- 문화체육관광부(2017) 「2016 문화향수실태조사」 결과 경기도민이 인식하는 문화예술교육 걸림돌로 '시간이 좀처럼 나지 않는다(27.8%)'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⁸⁾
- 의도된 연출로 정해진 시간에 공공의 공간에서 하는 문화예술교육과 더불어 문화예술교육의 기회 및 접근성 확대를 위한 불특정 다수 대상 프로그램 기획·운영 필요

■ 사업내용

- 불특정 다수 대상 문화예술교육 버스킹 프로그램 공모
 - 놀이터, 노인정, 생활체육시설 등 유휴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공모
 - 문화예술교육 수혜 대상, 장소 등 공모 내용은 문화예술교육 단체(개인)에 자율성 부여
- 버스킹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 단계별 추진계획

추진계획	추진일정				
	2018	2019	2020	2021	2022
불특정 다수 대상 문화예술교육 버스킹 프로그램 공모					
버스킹 프로그램 운영					

■ 기대효과

- 다양한 예술 장르와 방법론을 활용하여 참여자에게 일상을 새롭게 낫설게 볼 수 있는 경험 제공
- 버스킹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홍보 효과 제고

8) 조사기간 : 2016.9.1.~2016.11.11./ 조사 기준 시점: 2016.9.1. / 표본수 1,393명

추진전략 4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역량 강화

세부과제 4-1 문화예술교육 단체(개인) 멘토링 제도 도입

■ 배경 및 목적

- 문화예술교육 신진 단체(개인)와 경력 단체(개인) 간 소통,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기획서 작성부터 사업 진행까지 신진 문화예술교육 단체(개인)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 부족
- 워크숍, 간담회 등과 같은 일회성 프로그램 운영이 아닌 문화예술교육 단체 간 관련 지식과 정보 공유를 위한 소통 구조 마련 필요
- 신진 단체(개인)와 경력 단체(개인) 간 연계협력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현장 중심 연계 시스템 마련 필요

■ 사업내용

- 경력단체(개인)-신진단체(개인) 간 멘토링 제도 프로그램 기획
 - 대상별·내용별·단계별 프로그램 기획
- 경력단체-신규단체 간 멘토링 제도 도입·운영
- 경력단체-신규단체 간 멘토링 우수 사례 발굴·확산

■ 단계별 추진계획

추진계획	추진일정				
	2018	2019	2020	2021	2022
경력단체-신규단체 간 멘토링 제도 프로그램 기획					
경력단체-신규단체 간 멘토링 제도 도입·운영					
경력단체-신규단체 간 멘토링 우수 사례 발굴·확산					

■ 기대효과

- 문화예술교육 단체(개인) 간 네트워크 활성화로 융복합 프로그램 개발·운영 기반 조성
- 예술가 간 교류확대 및 의견수렴을 통한 사업의 효율성 제고 도모

세부과제 4-2 기관 실무자 기획역량 제고 프로그램 운영

■ 배경 및 목적

- 지원기관 인력들의 기획 역량과 마인드는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단체(개인) 및 수요자에 영향
- 문화예술교육 현장과 정책을 잇는 실무자의 문화예술교육 전문성 강화 필요
- 기관 실무자의 기획 역량과 마인드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 필요

■ 사업내용

- 기관 실무자 기획역량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
 - 워크숍 등 단기 프로그램과 더불어 중장기 프로그램 기획
- 기관 실무자 기획역량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단계별 추진계획

추진계획	추진일정				
	2018	2019	2020	2021	2022
기관 실무자 기획역량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					
기관 실무자 기획역량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기대효과

- 기관 실무자 기획 역량강화를 통한 문화예술교육의 질 제고에 기여
- 사회·정책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 향상으로 지속가능한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기반 마련

세부과제 4-3 협력관계자-문화예술교육 단체(개인) 연수 체계 구축

■ 배경 및 목적

-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연수 프로그램은 대부분 강사, 교원, 행정가 등이 각각 따로 연수받는 칸막이 연수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모두 유사하게 구조화된 프로그램 연수
- 문화예술교육 단체(개인)와 매개자(학교 교사, 관계 기관 실무자 등) 간의 교감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각 이해관계자들이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올바르게 소통할 수 있는 구조 마련으로 철학과 삶을 공유하고 서로 배우며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연수 필요
 - 기존 학교 교사와 문화예술교육 강사 사이에서 혼재되어 있는 역할과 의의에 대한 차이가 모호, 현행 학교 강사 및 문화예술교육 단체(개인)이 서로 문화예술교육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볼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 필요
- 문화예술교육 관계자간 상호 이해와 협력 제고, 경력 개발을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차별화 된 지역기반 협력관계자-문화예술교육 단체(개인) 연수 체계 구축 및 운영 필요

■ 사업내용

- 협력관계자-문화예술교육 단체(개인) 연수 계획 수립 및 운영
 - 일반 교사, 학교장·교감, 행정기관, 공무원 등과 문화예술교육단체(개인)이 함께하는 연수 프로그램 운영(학교담당자+예술강사, 재단+학교장 등 참여 기관 의무연수 추진)
 - 문화예술교육 단체(개인)의 경력 개발 트랙, 비전 등 경력 개발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확대 운영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속적·장기적 문화예술교육 관련 연수 제공
 - 단순 전달 형식의 강의가 아닌 서로 듣고 보여주는 형태로 실무자와 개인이 상호작용하고 소통하고, 나아가 문화예술교육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연수 주제와 시간, 프로그램 제공
 - 연수의 한계를 넘어 일상적 소통을 하며 학습할 수 있는 공유의 통로로 확대 운영 필요

■ 단계별 추진계획

추진계획	추진일정				
	2018	2019	2020	2021	2022
협력관계자-문화예술교육 단체(개인) 연수 계획 수립 및 운영					

■ 기대효과

- 협력관계자-문화예술교육 단체(개인) 간 소통과 비전 공유를 통한 동반성장 도모
- 협력관계자, 문화예술교육 단체(개인)의 역할과 주인의식 제고 도모

추진전략 5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구축

세부과제 5-1

문화예술교육 협동조합 발굴·육성

■ 배경 및 목적

- 2018년 11월 기준 경기도 내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동조합은 186개로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13년 30개, '14년 66개, '15년 102개, '16년 133개, '17년 155개)⁹⁾
- 도내 문화예술교육 관련 단체(개인)가 갖는 문화예술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협동조합 발굴·육성 지원 필요

■ 사업내용

- 경기도형 문화예술교육 협동조합 모델 구축
 - 경기도 내 문화예술교육 협동조합 실태 조사
 - 문화예술분야 장르, 활동 지역 등을 고려한 사회적기업 모델 구축
- 경기도형 문화예술교육 협동조합 육성계획 수립
 - 맞춤형 경영 지원, 네트워크 활성화, 정보와 지식 공유 등 육성 지원 방안 모색
- 경기도형 문화예술교육 협동조합 발굴 및 육성 지원

■ 단계별 추진계획

추진계획	추진일정				
	2018	2019	2020	2021	2022
경기도형 문화예술교육 협동조합 모델 구축					
경기도형 문화예술교육 협동조합 육성계획 수립					
경기도형 문화예술교육 협동조합 발굴·육성 지원					

■ 기대효과

- 경기도 지역 문화예술교육 단체(개인)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로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기반 조성에 기여

9) "협동조합 설립현황",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coop.go.kr).

■ 배경 및 목적

- 문화예술교육 관련하여 장기적으로 집계·조사된 자료 부재
- 문화예술교육 관련 정보가 소통될 수 있는 열린 채널 부재로 제한된 인력풀 활용, 성공적인 교육 콘텐츠 공유 및 확산의 어려움, 문화예술교육 주체 간 교류협력의 어려움, 문화예술교육 관련 정책 및 교육 정보 등에 대한 접근성 격차 발생 등 문제 야기
- 문화예술교육 관련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중간시스템 필요

■ 사업내용

- 문화예술교육 플랫폼 구축 계획 수립
 -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정보, 문화예술교육단체(개인) 풀(pool), 지역 내 문화자원 및 수요,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등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계획 수립
- 수요자와 공급자를 이어주는 플랫폼 구축
 - 경기 문화예술교육 관련 통합 DB 및 온라인 시스템 구축
- 플랫폼 운영 및 확대 추진
 - 경기 문화예술교육 플랫폼 운영 및 홍보, 통합 DB 업데이트 및 제공

■ 단계별 추진계획

추진계획	추진일정				
	2018	2019	2020	2021	2022
문화예술교육 플랫폼 구축 계획 수립					
수요자와 공급자를 이어주는 플랫폼 구축					
플랫폼 운영 및 확대 추진					

■ 기대효과

- 문화예술교육 관련 빅데이터 구축 및 공유를 통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생산·확대로 새로운 가치창출에 기여
- 경기도민에 문화예술교육 관련 통합 정보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문화향유 기회 제고

■ 배경 및 목적

- 성남시·성남교육지원청은 폐교 예정인 구 영성여중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예술가와 예술강사들이 상주하면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개발·운영할 수 있는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조성 계획¹⁰⁾
- 경기도 범위에서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개발·운영, 문화예술교육 매개자 인력 양성, 관계자 워크숍·포럼 등을 위한 전용 공간 부재
- 경기도 내 문화예술교육 매개인력양성 및 인적자원의 체계적 관리, 프로그램 기획·개발·운영을 위한 전용 공간 필요

■ 사업내용

- (가칭)경기 문화예술학교 조성·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문화예술매개자 양성, 지역 문화예술교육 단체(개인) 프로그램 기획·개발,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연수·워크숍·포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기본계획 수립
- (가칭)경기 문화예술학교 공간 발굴·조성
 - 도내 유휴공간 발굴 및 (가칭)경기 문화예술학교 조성
- (가칭)경기 문화예술학교 단계적 도입 및 운영

■ 단계별 추진계획

추진계획	추진일정				
	2018	2019	2020	2021	2022
(가칭)경기 문화예술학교 조성·운영 기본계획 수립					
(가칭)경기 문화예술학교 공간 발굴·조성					
(가칭)경기 문화예술학교 단계적 도입 및 운영					

■ 기대효과

- 지역 신진 문화예술교육 단체(개인) 발굴, 프로그램 기획·개발 활성화로 지역 문화예술교육 향유권 신장 및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

10) “한국형 아난탈로 ‘꿈꾸는 예술터’ 본격 추진-문체부, 유휴공간 활용 문화예술교육센터 2개소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18.3.30.).

세부과제 5-4 문화예술교육 홍보 프로그램 강화

■ 배경 및 목적

- 문화체육관광부 「2016년 문화향수실태조사」에 따르면 경기도민 14.5%만이 최근 1년 간 문화예술교육 경험¹¹⁾
- 경기도민의 문화예술교육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경험 제고를 위한 문화예술교육과 관련 홍보 다각화 필요

■ 사업내용

- 문화예술교육 홍보 계획 수립
 - 1인 미디어 캠페인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홍보 프로그램 등 홍보 계획 수립
- 문화예술교육 홍보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 문화예술교육 가치 확산을 위한 행사 개최
 - 포럼, 토론회, 성과공유회, 워크숍 등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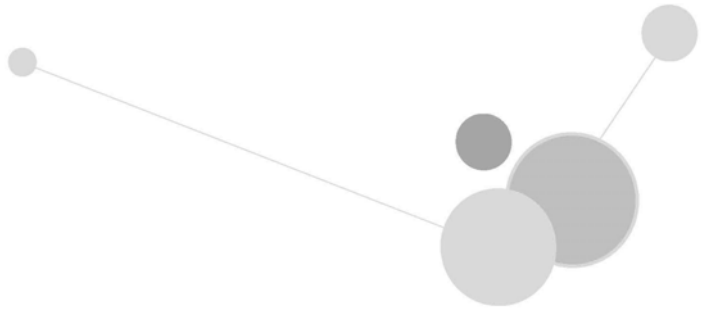
■ 단계별 추진계획

추진계획	추진일정				
	2018	2019	2020	2021	2022
문화예술교육 홍보 계획 수립	■	■	■	■	■
문화예술교육 홍보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	■	■	■
문화예술교육 가치 확산을 위한 행사 개최		■ ■	■ ■	■ ■	■ ■

■ 기대효과

- 경기도민 문화예술교육 기회확대 및 문화향수권 증대 도모

11) 조사기간 : 2016.9.1.~2016.11.11./ 조사 기준 시점: 2016.9.1. / 표본수 1,393명



제5장 요약 및 정책제언

- 1. 요약
- 2. 정책제언

제 5 장 요약 및 정책제언

1. 요약

■ 현황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계획 수립 방향

- 문화예술교육 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지역주도의 자율적 교육 체계 확립 필요
 - 문화예술교육 대상이 '소외된 취약계층' 중심에서 '전국민'으로 확장되고, 문화예술 향유의 목적과 방향성이 일상화·보편화로 전환
 - 기존의 수직적 구도를 탈피하고 지역의 자율성을 고려한 문화예술교육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로 기초 단위의 구심점을 통해 광역 지자체·광역 단체와 중앙정부가 연계성·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 강화 필요
 - 지역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프로그램 다각화 필요성 대두
 - 인터넷, 모바일, 인공지능 등 기술적 혁신이 두드러지는 추세에 따라 창의적 콘텐츠 개발 및 융합·확장을 위한 관점 전환 필요
- 교육인력의 전문성 확대 및 안정적 지원 등 필요
 - 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사의 지위 및 처우 개선,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은 안정적 문화예술교육의 전제 조건이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노력 필요
-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관계기관 간 연계협력 필요
 - 교육의 대상과 영역이 뚜렷한 경계로 구별될 수 없고 상호 교차되는 부분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연계협력 방안 모색 필요

■ 간담회 및 워크숍 통해 도출된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계획 수립 방향

-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위상 강화, 독립 필요
-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운영을 위한 지역 기반 지원사업 필요
 -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역 내 문화예술 공간 발굴·조성, 지역 단위 문화예술교육 수요 조사 등

- 다양한 수요자를 고려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개발 필요
- 유관기관 간 역할 명확화 및 협력체계 구축 필요
-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시스템 변화 필요
 - 문화예술교육의 단기적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지원 사업 추진
 - 세분화 된 예산항목보다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예산 지원
 - 객관적이고 투명한 지원사업 대상 선정, 사업 선정 결과의 공유
 - 다양한 시각에서 적용되는 지원사업 평가기준
 - 킬러콘텐츠에 대하여 저작권 보호와 같은 보상 방법 마련
-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역량의 질적 담보 방안 마련 필요
 - 경기도 내 문화예술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토대로 한 인력양성 필요
 - 경기도 차원의 네트워크 속에서 체계적인 인력관리 필요
- 경기도 차원의 문화예술교육 아카이빙 및 플랫폼 구축 필요
- 문화예술교육의 가치 확산을 위한 논의의 장 마련 필요

■ 경기문화예술교육 비전과 3대 목표 5대 추진전략 제시

- '삶 속에 스며드는 뿌리가 튼튼한 경기문화예술교육'을 비전으로 3대 목표, 5대 추진전략 제시
 - 5대 추진전략에 대한 20개 경기문화예술교육 세부과제 제시

[경기문화예술교육 3대 목표 및 5대 추진전략]



[5대 추진전략별 세부과제 구성]

추진전략	세부과제
지속가능한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기반 조성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개정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간 협의회 구축·운영 확대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기능 강화 및 기초 단위 확대·운영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중단연구 지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개발 지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평가 방안 연구 지원	
지역 기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문화예술교육 공간 지원(유희공간 발굴·조성, 대관료 지원 등)
	문화예술교육 단체(개인)-기획자 연계를 통한 특화 콘텐츠 발굴 지원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단체(개인) 풀(Pool) 구축
수요자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제공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관련 프로그램 실태 조사 및 연계
	문화예술교육 수요자 세분화 및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통합문화이용권 연계 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문화예술교육 버스킹 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교육 단체(개인) 멘토링 제도 도입
	기관 실무자 기획역량 제고 프로그램 운영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구축	협력관계자-문화예술교육 단체(개인) 연수 체계 구축
	문화예술교육 협동조합 발굴·육성
	문화예술교육 플랫폼 구축운영
	(가칭)경기 문화예술학교 조성·운영
문화예술교육 홍보 프로그램 강화	

2. 정책제언

■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독립

-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업은 위탁사업 위주로 추진되고 있어 중앙정부에 대한 예산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
-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경기도의 문화예술교육 대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집행과 사업 기획·운영의 자율성이 제한적
- 지역분권과 문화자치 측면에서 경기도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독립된 경기문화예술교육센터 운영 필요
- 인력 확충과 더불어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한 예산 편성의 자율성 확보, 사업운영 권한 위임을 시작으로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독립 추진
-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독립으로 자율적인 지역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구축·운영 기대

■ 경기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자체 예산 수립

- 「경기도 문화예술교육지원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르면 경기도는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을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고 명시
- 동 조례 제19조에서는 “도지사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 교육시설, 단체 등에 프로그램 개발·보급,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
- 따라서 경기도 자체 예산 수립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기반 강화 지원 필요

■ 문화예술교육의 체계적 관리·운영을 위한 문화예술교육팀 신설

- 경기도 내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원, 문화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상·분야별 구분을 넘어 큰 틀에서의 문화예술교육 정책 사업을 운영, 총괄할 수 있는 도내 전담조직 부재
-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을 다각적으로 운영, 총괄하기 위하여 전담조직 신설 필요
- 신설된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교육청과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연계 협력 도모 필요

■ 경기문화예술교육 강사 인증제 및 지원제도 도입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에 대하여 변별력·실효성 측면에서 지속적 문제 제기, 문화예술교육사의 역량과 질적 수준이 담보되지 못한다는 문제 역시 대두되고 있음

- 성적에 관계없이 이수 여부에 따라 배부되어 단기간 취득 가능한 문화예술교육사의 변별력에 대한 문제 제기
- 경기도 내 문화예술교육사 역량강화 및 문화예술교육사-학교 교사 간 상호협력 체계 마련
- 경기도 내 문화예술교육 단체(개인)이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그들 역할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인증제, 적합단체(개인)의 자격 검증 등록제 등 지원제도 도입 필요
- 경기도 차원의 교육 필증 등을 통한 인력관리로 문화예술교육 단체(개인)의 질적 담보 필요

■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 방안 마련

-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기반 마련 필요
- 지역 내 환경과 수요를 반영한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정책지원 체계 구축을 위하여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지원 관련 조례 제정부터 문화예술교육센터 구축·운영까지 단계적 방안 마련 필요
-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운영 필요
-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통해 지역 내 문화예술 역량을 가진 인적 자원, 문화예술 콘텐츠 발굴 및 연계가 가능한 상향식(bottom-up) 플랫폼을 구축, 운영하여 유기적이고 입체적인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구축 필요

■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운영 방식 변화 필요

-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삶 속에서 문화예술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 1년 단위 사업 형식의 프로그램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한계
- 단기사업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교육의 성과가 가시화될 때까지 문화예술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추진 필요
- 문화예술교육을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됨
-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현 시스템은 정보의 축적과 공유가 이루어질 수 없는 한계
- 프로그램 지원이 아닌 문화예술교육 단체(개인)에 대한 지원으로 정보의 축적과 공유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 운영 방식 변화 필요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필요 예산 항목이 유동적인 반면 현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은 세분화 된 예산항목을 제시하여 문화예술교육 단체(개인)이 그에 맞게 집행 필요
- 세분화 된 예산항목보다 프로그램에 대한 포괄 예산 지원 등 예산 편성의 자율성 제공 필요

■ 문화예술교육 단체(개인)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확대

-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시 문화예술교육 단체(개인)가 예산안 기획부터 정산 및 정산보고서 작성까지 수행
-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정산 관련 메뉴얼이 제작·보급되고 있으나 e-나라도움을 통한 정산 및 정산보고서 작성에 문화예술교육 단체(개인) 어려움을 느낌
- 문화예술교육 단체(개인)이 본연의 역할인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산보고서 간소화, 정산 인력 지원 등 행정적 지원 확대 필요
- 4대 보험 가입, 운영인력(코디네이터, 기획, 활동비) 등 지원 방안 다각화 필요

참 고 문 헌

- 교육부(2018). 『2018년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기본계획』.
- 경기도교육청(2015). 『학교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5~2018)』.
- 경기도교육청(2017). 『경기교육 발전계획 2017-2022』.
- 경기도교육청(2017). 『2018 문예교육과 기본 계획』.
-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2017). 『2017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결과자료집』.
- 김성숙(2007). “문화예술교육에서 미술교육의 역할”, 『조형연구』 30:1-20.
- 김세훈 외(2004). 『문화예술교육 증장기 발전 방안』,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남인우 외(2016).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경기예술교육활성화 방안』, 경기도교육청.
- 문화체육관광부(2014). 『2014 문화예술교육 증장기 발전계획』.
-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6년 문화예술정책백서』.
- 문화체육관광부(2017). 『2017년도 예산(일반회계) 집행계획』.
- 문화체육관광부(2017). 『2017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년도 예산(일반회계) 집행계획』.
- 문화체육관광부(2018). 『문화비전 2030』.
- 문화체육관광부(2018).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
- 서우석 외(2018). 『2017 지역문화예술교육 현황조사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양현미 외(2004).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 조성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이신영 외(2018).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단체 현황 연구』, 경기문화재단.
- 최보연 외(2017).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 분석 및 개선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8). 『2017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연차보고서』.
- 황상훈 외(2015). 『대전시 문화예술교육 정책연구』, 대전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http://ggarte.ggcf.kr/).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www.arte.or.kr/index.do).

부록 1. 함께 한 사람들

이름	소속 및 직위
김미애	양상블은 대표
김석범	수원대학교 문화예술대학 교수
노수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학교예술강사
류자영	(前)부천문화재단 팀장
류해석	경기도교육청 문예교육과 장학사
박준하	세계문화유산교류프로젝트 대표
백현주	수원시 평생학습관 기획실장
손상희	그림자공장 대표
심재연	부천문화재단 시민문화본부장
여세진	문화놀이터 액션가면 대표
오준석	극단 하늘 나는 오징어 대표
유지선	상명대학교 문화예술교육센터 강사
유홍영	극단 사다리 대표
이상훈	성남문화재단 문화사업부장
이송하	서울무용교육원 연구원
이수철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 과장
정원철	추계예술대학교 교수
조재경	고무신학교 대표
한지아	문화놀이터 액션가면 기획팀장

* 가나다 순으로 나열